

소 방 법 령 I

강원도소방학교

소방서비스 헌장

우리 소방인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소방의 진정한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1. 긴급구조와 화재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소방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의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공공 질서유지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校 訓

배움으로 先進消防

나눔으로 奉仕消防

현장으로 最强消防

반 명	
교 번	
성 명	

01

소방공무원법

Gangwondo Fire Service Academy



목 · 차

CONTENTS

제 1 장 총 칙 / 5

제 1 절	소방공무원법의 목적	5
제 2 절	공무원의 구분	5
제 3 절	계급구분	6
제 4 절	용어의 정의	8

제 2 장 인사위원회 / 9

제 3 장 임용과 보직관리 / 10

제 1 절	신규채용	10
제 2 절	임 용	28
제 3 절	보직관리 등	33
제 4 절	인사기록	42

제 4 장 승 진 / 47

제 1 절	승진의 구분 및 요건	47
제 2 절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	52
제 3 절	승진대상자명부 등	59
제 4 절	심사승진	64
제 5 절	시험승진	69
제 6 절	특별승진	72
제 7 절	근속승진제도	74
제 8 절	대우공무원제도	75

제 5 장 신분보장 / 77

제 1 절 신분조치 77
제 2 절 정 년 82
제 3 절 징 계 83

【 부 록 】

1.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105
2.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125
3. 소방공무원 임용령 145
4. 소방공무원 시행규칙 177
5. 소방공무원 징계령 194
6.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3
7.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228

제 1 장 총 칙

제1절 소방공무원법의 목적

소방공무원법은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공무원의 구분

1.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나. 특정직공무원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 계급,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 :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으로 규정

예)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다.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가. 정무직공무원

- 1)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 2)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나.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다. 계약직공무원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라.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3절 계급구분

1. 국가소방공무원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 방 감
소방준감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2.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소방공무원 계급 체계의 변천사

대통령령제208호 (49. 11. 15)			경무관	총 경	경감 소방감	경위 소방사	경사 소방사보	순경 소방원			
대통령령제436호 (50. 12. 30)			경무관	총 경	경감 소방감	경위 소방사	경사 소방사보	순경 소방원			
국무원령제240호 (61. 4. 15)			경무관	총 경 소방령	경감 소방감	경위 소방사	경사 소방사보	순경 소방원			
각령 제1317호 개정 (63. 5. 29)	치안 이사관	치안 부이사관	경무관	총경 소방령	경감 소방감	경위 소방사	경사 소방사보	순경 소방원			
경찰공무원법 법률 제2077호 (69. 1. 7)	치안 총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소방총경	경정 소방경정	경감 소방경감	경위 소방경위	경사 소방사	순경 소방장	소방원	
지방소방공무원법 법률 제2502호 (73. 2. 8)	소방사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사	소방원			
지방소방공무원법 법률 제2948호 (77. 2. 1)	지 방 소방사감	지 방 소방정감	지 방 소방감	지 방 소방정	지 방 소방령	지 방 소방경	지 방 소방위	지 방 소방장	지 방 소방교	지 방 소방사	
소방공무원법제정 법률 제3042호 (77. 12. 31)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소방공무원법개정 법률 제4992호 (95. 12. 6)	소방 총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소방공무원법개정 법률 제 7186호 (04. 12. 30)	소방 총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제4절 용어의 정의

(소방공무원법 제1조의2, 신설 / 시행 2010. 3. 22.)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3호, 개정 / 시행 2011. 1. 28.)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방재청·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단·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한다.

※ 행정안전부, 소방본부,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구조대 등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3호의 소방기관이 아님

(지방공무원법 제5조, 개정 / 시행 2008. 12. 31.)

1. “직위” :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 :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 :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 :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 :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 : 같은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 : 같은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제 2 장 인사위원회

1. 설 치 : 소방방재청 및 특별시·광역시·도 (이하 시·도라 한다)
2.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
3. 위원장
 - 가. 소방방재청 : 소방방재청차장
 - 나. 시·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특별시 : 행정(1)부시장, 광역시 : 행정부시장, 도 : 행정부지사)
4. 위 원 :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
5. 의결정족수 :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6. 기 능(심의사항)
 - 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 나.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 다.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가 당해 인사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 3 장 임용과 보직관리

제1절 신규채용

1. 신규채용 시험의 구분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 소방령·지방소방령, 소방사·지방소방사의 채용

나. 특별채용시험 : 전 계급의 채용

다. 공개경쟁선발시험 : 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

특별채용 (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1) 제1호 : 다음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직권면직 된 경우
 -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여 휴직한 자가 휴직기간의 만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여 직권면직 된 경우
- 2) 제2호 :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 3) 제3호 :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임용하는 경우
- 4) 제4호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5) 제5호 :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소방장학생)를 임용하는 경우
- 6) 제6호 :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 7) 제7호 :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8) 제8호 :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당해 시·도의 지방소방사 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시험실시기관 (소방공무원법 제9조)

가. 소방방재청장

- 1) 국가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 2)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함)

나. 시·도지사 : 지방소방경이하의 신규채용시험

※ 시·도지사의 시험문제 출제의뢰(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3항, 신설 / 시행 2010.12.27.)
-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 중앙소방학교장(소방방재청장의 시험실시권의 위임·위탁)

- 1) 소방간부후보생(국가·지방) 선발시험(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 2)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의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로의 특별채용시험(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 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소방사 또는 지방소방사로의 특별채용시험(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2항)

※ 의무소방원 특별채용시험 : 「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 중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제4항 제3호의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는 바, 그 채용시험 실시권자는 임용권자인 시·도지사이지만 의무소방원 출산자 채용확대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의 특별채용시험은 임용권자인 시·도지사와 중앙소방학교장이 모두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응시자격의 제한

가. 일반적인 제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10항)

나. 학 력

1)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한없음

2) 특별채용시험

가)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관련 별표4)

임용예정직무분야	응시교육과정
소방 분야	소방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방재학과 · 소방행정학과 ·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구급 분야	응급구조학과 · 간호학과 · 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화학 분야	화학과 · 응용화학과 · 화학공학과 ·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기계 분야	기계과 · 기계공학과 · 기계설계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기 분야	전기과 · 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건축 분야	건축과 · 건축학과 · 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 · 지방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위 · 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장 · 지방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 · 지방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나)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소방장학생)의 특별채용시험(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개정 2011. 1. 3./시행 2012. 1. 1.)

- (1) 대학졸업자 :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의 계급
- (2) 전문대학 졸업자 : 소방교·지방소방교 이하의 계급
- (3) 고등학교졸업자 : 소방사·지방소방사

다)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특별채용시험 : 학사학위소지자

※ 특별채용의 요건 등(외국어에 능통한 자,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제7항)

-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특별채용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당해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 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 응시연령

1)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시험 응시연령(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2)

계 급 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	25세이상 40세이하	20세이상 45세이하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23세이상 40세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이상 45세이하)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교·지방소방교		20세이상 35세이하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는 23세이상 40세이하)
소방사·지방소방사	21세이상 30세이하	20세이상 30세이하

2)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응시연령 : 21세이상 30세이하

3)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6항)

- (가)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다)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응시연령의 기준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시 상한 연령 연장기간

- 2년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1년이상 2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1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라. 신체 조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표(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 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마. 자격조건

- 1) 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 선발시험 또는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4항)

- 2) 임용권자는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5항)

바. 거주지 제한(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9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시·도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사. 경력·자격 기타

- 1) 공개경쟁채용시험 : 제한없음
2) 특별채용시험

가)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제1호)

- (1) 퇴직사유가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됨에 따라 직권면직 되었거나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여 휴직중에 있던 자가 휴직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여 퇴직한 경우에 한하여
(2)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이 경우의 특별채용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제2항)

나)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 소지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제2호)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채용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제3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특별채용 응시자격 구분 표(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관련 별표2)

임용예정분야	응 시 자 격
소방 분야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구급 분야	응급구조사(1급·2급), 간호사, 의사
화학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축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전자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전기·전자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통신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
소방정·항공 분야	1급 ~ 6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기능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p>비고: 채용계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2. 기술사, 기능장, 1급 ~ 4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3. 기사, 5급 ~ 6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격 외의 자격: 소방교·지방소방교 이하 	

다)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이므로 당해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이상인 자
- (2)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1)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4항 관련 별표1)

부 문 별	특 수 기 술
화 재 조 사	화재원인 및 피해재산조사기술
통 신	유선·무선 또는 전자통신기술
소방정·소방헬기 조종 및 정비	소방정·소방헬기의 조종기술 또는 소방정·소방헬기의 기관정비 기술
장 비	소방차량의 정비 또는 운전기술
전 자 계 산	시스템 관리·조작·분석·설계 또는 프로그래밍기술
구 급	응급처치기술
회 계	경리·예산편성 또는 회계감사

2) 특별채용계급 환산기준 표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3)

구 분 계 급	국가·지방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경 찰 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정부관리 기업체
					초·중·고등 학교 교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원	
소방령 지방소방령	5급			소령	18~23 호 봉	13~18 호 봉	11~16 호 봉	과 장 차 장
소방경 지방소방경	6급 (3년 이상)	기능직 5등급		대위	14~17 호 봉	11~12 호 봉	9~10 호 봉	계장, 대리(3년이상)
소방위 지방소방위	6급	기능직 6등급	경위	중위·소 위·준위	11~13 호 봉	9~10 호 봉	7~8 호 봉	계장, 대리
소방장 지방소방장	7급	기능직 7등급	경사	상사	9~10 호 봉	8호봉 이 하	6호봉 이 하	평사원 (3년이상)
소방교 지방소방교	8급	기능직 8등급	경장	중사	4~8 호 봉			평사원
소방사 지방소방사	9급	기능직 9등급이하	순경	하사 (병)	3호봉 이하			평사원

※ 비고

1.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특별채용 한다.
2. 교육공무원란 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3. 군인란 중 괄호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4)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

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소방장학생)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마)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1) 외국어의 수준 : 외국어 능력은 당해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제7항)

(2) 임용예정계급 :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바)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경위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사)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당해 시·도의 지방소방사 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1) 지역요건 :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군지역이거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지역 또는 읍·면·지역

- (2) 경력요건 : 관할지역 내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3) 채용시기요건 : 해당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 설치된 날로부터 1년이내 이어야 한다.
- (4) 채용인원의 한정 :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 정원 중 지방소방사 정원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4. 시험의 방법 및 구분 등

가. 시험의 방법

- 1) 필기시험 :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을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체력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근력·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3)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 4) 면접시험 :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 신원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5)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6)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시험의 구분

- 1) 공개채용시험 : 다음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지방소방사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나)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다) 제3차 시험 : 체력시험
 - 라) 제4차 시험 : 신체검사
 - 마)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2) 특별채용시험 : 신체검사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제3장 제1절 제1의 특별채용 참조) 다만,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을 특별채용 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 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재임용,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력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나)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임용예정에 상응한 근무실적이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자, 경찰공무원 : 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다) 소방장학생을 임용하는 특별채용시험 : 서류전형·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3)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공개경쟁시험 실시방법을 준용하여 선발한다.
(단, 시험의 구분 중 제2차시험은 제외함)
 - 나)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지방소방위예의 채용시험
 - (1) 소방간부후보생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소방간부후보생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시험방법, 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한다.

5. 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

가. 시험과목

1)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제44조관련, 별표3>

과목별 채용계급별	제1차 시험과목	제2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 과 목
소방령, 지방소방령	한국사, 헌법,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사, 지방소방사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이하 같다)

2)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제44조관련, 별표5>

과 목 별 채용계급별	필 수 과 목	선 택 과 목
소방정, 지방소방정 소방령, 지방소방령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경, 지방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위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비고

1. 소방사·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소방사·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과목은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로 한다.

3)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제44조관련, 별표4>

구분	과목별	필수과목	선택과목(2)
제1차필기시험		영어,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정보통신공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중 2과목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44조 단서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 (PBT : Paper Based Test)·시.비.티.(CBT : Comput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 Inernet Baset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지텔프 (G-TELP)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정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5조)

- 1)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2) 소방장·지방소방장 및 소방교·지방소방교 :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3) 소방사·지방소방사 :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6. 합격자 결정 등

가. 1차, 2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문형 필기시험)

- 1)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자 결정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내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1호)
- 2)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내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나. 3차시험(체력검사)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 목	성 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4	174~ 178	179~ 186	186~ 194	195~ 205	206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이상

1. 영 제4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다. 4차시험(신체검사)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라. 5차시험(면접시험)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아래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3)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4) 예의·품행·성실성·봉사성
-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마. 최종합격자의 결정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하고, 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 1)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 2)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3) 필기시험·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4) 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6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5) 필기시험·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바. 추가합격자 결정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사. 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하며 동점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7.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조치

- 1)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2)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8. 신규채용후보자의 등록 등

가. 등록대상자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

- 1)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 2) 특별채용시험 합격자
- 3)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합격되어 교육훈련을 마친 자

나. 등록요령

등록대상자는 소정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소방공무원 임용령시행규칙에 규정된 등록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한내에 미등록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등록필증을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 2) 채용후보자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3) 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가) 취업보호대상자
 - 나)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 다) 연령이 많은 사람

라.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마.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질병·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

제2절 임 용

1. 임용권자

가. 국가소방공무원

- 임용권자

임 용 사 항	임용권자	비 고
○소방령이상의 신규채용·승진·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대 통 령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
○소방준감이하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 ○소방경이하의 모든 임용	소방방재청장	

- 임용권의 위임

임 용 사 항	임용권자	임용권 수입자
○소방정이하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대 통 령	소방방재청장
○시·도소속 국가공무원중 소방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소속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소방경이하의 임용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 제외)	소방방재청장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경이하의 임용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 제외)	소방방재청장	중앙119구조단장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위임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나. 지방소방공무원

- 임용권자

임 용 사 항	임용권자	비 고
○ 모든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	시·도지사	

- 임용권의 위임

임 용 사 항	임용권자	임용권수임자
○ 소속 지방소방경이하의 당해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 안에서의 전보 (서울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경기소방학교의 경우 지방소방령이하) ○ 소속 지방소방위이하의 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시·도지사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 방 서 장

2. 임용결격사유

가. 일반적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0. 3.22)
-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특별채용 요건상 결격사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

3. 신규임용

가. 임용순위(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9조 제1항)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

-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2) 6월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 3) 도서·벽지·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 4) 채용후보자의 피 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나. 임용의 유예

1) 유예대상

- 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 나)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 경우
- 라)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 마) 기타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예신청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유예조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4. 시보임용

가. 시보임용의 의의

시보임용제도는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동안 신규채용자에 대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적성 등 적격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나. 시보임용의 기간

계급별로 다음 기간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1)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 6월
- 2)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 1년

다. 시보임용기간의 계산

- 1)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시보기간중의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기간
- 2)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는 기간
 - 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간 교류임용시 동일계급에서 근무하는 기간
 - 나)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라. 시보임용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 1) 소방공무원으로서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 2)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마.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

- 1)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또는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포함)을 시킬 수 있다.
- 2) 시보임용예정자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교육훈련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시보소방공무원의 관리

1) 근무상황의 지도·감독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면직 또는 면직제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일 때

다)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

5. 임용시기 등

가. 임용 및 면직일자 등

1) 임용일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항)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사망으로 인한 면직일자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한 것으로 본다.

나. 임용일자의 소급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없다.

-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3절 보직관리 등

1. 보직관리

가.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1) 1소방공무원 1직위 부여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전공,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한 보직부여

당해 소방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상위계급에 하위계급자 보직부여제한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고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특수자격증 소지자의 관련직위에 보직부여

특수한 자격증 소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5) 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초임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가)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 지방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

※ 최하급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또는 중앙119구조단, 특별시·광역시·도의 소방본부·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소방기관을 말한다.

나) 신규채용에 의하여 소방사 또는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자는 최하급 소방기관의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당해 자격관련 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6) 소방관서장의 보직

가) 시·도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적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직위에 전보하여야 한다.(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 고려하여 1년 범위에서 전보시기 조정 가능)

나)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7)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최초 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관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나. 보직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 1)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에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2)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 3) 직제의 신설·개폐 등이 있는 때에 2월이내의 기간 소속 소방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전 보

가. 전보제한의 원칙

1) 일반적 전보제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2) 소방학교 교관으로 임용된자의 전보제한

교관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3) 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

가) 특별채용된 자의 일반적 전보제한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는 경우

-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사유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하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제4호 : 5급 공무원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제5호 :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나) 특정 직무분야에 근무조건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는 경우

-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조건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 제2호 : 임용예정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
 - 제3호 :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임용
 - 제6호 :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
 - 제7호 :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다)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이내에 최초 임용기관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4) 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자의 전보제한(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 제5항)

승진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5)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관련 직위에 보직된 자의 전보제한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가)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 : 2년

나) 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 3년

나. 전보제한의 특례

1) 일반적 전보제한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 가)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
- 나)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
- 다)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 라)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 마)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시
- 바)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 사)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자의 전보
- 아) 시보임용중인 자의 전보

2) 교관으로 임용된 자의 전보제한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 가) 기구의 개편시
- 나) 직제·정원의 변경시
- 다) 교육과정의 개폐시
- 라)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의 특례

가) 일반적 전보제한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과 5년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있다.

-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
- (2)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
- (3)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자의 전보

(4)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5)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의 전보

나) 소방업무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의 특례
최초의 직위에 임용되어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5년이내에 최초의 임용기관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4) 전보제한의 기간에 있어서 임용일로 보지 않는 경우

가)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강임 또는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일

나)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다)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교류임용

가. 국가·지방소방공무원간의 교류임용

그 계급에 상응하는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당해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때에는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임용권자가 다른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의 임용

결원보충에 있어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수가 결원수에 부족되고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신규채용후보자의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당해 기관의 임용후보자 명부로 보아 해당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

다. 지방소방공무원의 시·도간 인사교류

1)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 제1항)

- 가) 시·도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 나) 시·도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도간 교류하는 경우
- 다) 지방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류방법 및 기준(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 제2항, 제3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1조)

- 가) 교류인원(지방소방경 이하의 연고지 배치를 위한 경우는 제외)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다른 소방기관의 소속소방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때, 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다른 소방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전출·전입동의요구를 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전출·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의 인사교류계획 실시권고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파견근무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가. 파견근무의 대상 및 기간

-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2년이내
-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 1년이내

- 3)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년 이내
- 4)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간
- 5)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
-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
-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년 이내

나. 파견절차

위 '가'의 1)호 내지 3)호 및 5)호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 있어서는 파견받을 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5. 별도정원

가. 별도정원의 범위

다음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1) 6월이상 휴직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 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 2항의 규정 : 2008. 12 개정)
 - 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누락, 삽입)
 - 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누락, 삽입)
 - 라)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마)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바)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 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 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자)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차)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2) 1년 이상 파견된 경우(파견기간 만료 2월전 이후는 결원보충 불가함)
- 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외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나)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 다)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개월 이상)
 - 마)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퇴직예정자의 사회적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후의 사회적 적응능력배양을 위한 연수
(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4) 파면, 해임, 면직처분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3항)
-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 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따라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로부터 파면처분, 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별도정원의 사전승인

위의 “가. 별도정원의 범위” 중 2)의 경우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지방소방령이하 시·도 소방공무원의 보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보충할 수 있다.

다. 별도정원의 소멸

별도정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 1) 휴직자의 복직
- 2) 파견된 자의 복귀
- 3)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자의 복귀

제4절 인사기록

1. 인사기록의 작성

가. 인사기록관리자 등

- 1) 인사기록관리자 :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단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
- 2) 관리담당자 : 인사기록관리자가 지정한다.

나. 인사기록의 종류

인사기록은 원본과 부분으로 구분하며 원본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원본

- 가)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나) 복무선서
- 다) 공무원연금카드(부분) 라) 공무원건강카드
- 마) 신원조사회보서
- 바) 삭제
- 사)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 아) 삭제 자) 면허 기타 자격증명서
- 차) 경력증명서 카) 전력조사회보서
- 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파)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부분 :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다.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등

- 1)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작성자 :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하여야 한다.
- 2) 전보제한 사유의 기재 :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3) 인사기록의 재작성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 할 수 있다.
 - 가) 분실한 때
 - 나)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다) 정부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 라)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인사기록의 관리

가. 관리구분

1) 원본 : 당해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소방방재청장

(1)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의 것

(2) 소속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의 것

나) 중앙소방학교장 : 소속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의 것

다) 중앙119구조단장 : 소속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의 것

2) 부분

가) 소방방재청장

(1)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의 것(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단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 제외)

(2)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것

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단장 : 소속 국가소방공무원의 것

다)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 소속 지방소방공무원 것

나. 인사기록의 이관

소방공무원이 승진·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 소속인사기록관리자는 신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5일 이내에 다음 인사기록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본인에게 지참시켜서는 아니됨)

1) 인사기록서류

2) 최근 3년간(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와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표의 부분

다.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부분을 포함)에 기록하고 변경사항을 당

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또는 부분을 관리하는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증빙서류(사본)를 첨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1) 임용·징계·포상 기타의 인사발령
- 2) 성명·주소 기타 인사기록변경(당해 공무원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함)

라.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1) 말소대상

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1) 강등 : 9년
- (2) 정직 : 7년
- (3) 감봉 : 5년
- (4) 견책 : 3년

나)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다)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때

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2) 말소방법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위(나) 또는 (라)의 2)의 사유로 말소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 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 하여야 한다.

마. 인사기록의 열람

1) 인사기록의 열람제한 :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가) 인사기록관리자

나) 인사기록관리담당자

다) 본인

라)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2) 인사기록의 열람시 준수사항

위 '(1)의 (다)와 (라)'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소정의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인사기록의 수정

1) 인사기록의 수정금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기록을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나)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2) 증빙서류의 확인 : 본인의 정당한 요구에 의하여 인사기록을 수정하는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사. 퇴직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보관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인사기록관리자가 따로 영구 보존한다.

아. 교육훈련성적의 보고 등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

제1절 승진의 구분 및 요건

1. 승진임용의 구분 등

가. 승진의 의의

승진이란 하위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이는 책임이 증대하고 보수가 높아지며, 보다 큰 위신이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나. 승진임용의 방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은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과 근속승진제로 구분되며,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승진임용 방법으로 임용권자 재량에 의한 승진방법이 있다.

- 1) 임용권자 임의선발에 의한 승진임용 : 소방감·지방소방감 이상 계급에의 승진임용
- 2)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 :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에의 승진임용
- 3)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한 승진임용 :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임용
- 4) 특별승진 임용(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38조 참조)
 - 가) 순직자 및 명예퇴직자 : 모든 계급에의 승진임용
 - 나) 공로자 :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임용
- 5) 근속승진제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 2)

일정기간 재직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심사승진이나 시험승진과 관계없이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 근속승진해당자(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
 - 소방사(지방소방사) 5년이상 근속자
 - 소방교(지방소방교) 6년이상 근속자
 - 소방장(지방소방장)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 소방위(지방소방위) 12년이상 근속자

다.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책정

- 1) 당해 연도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계급별, 승진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 2) 소방위·지방소방위이하 계급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가)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에의 특별승진 : 당해 계급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1.5할 이내
 - 나)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에의 특별승진 : 당해 계급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2할이내
- 3)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는 경우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

2. 승진의 요건과 제한

가.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1) 계급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 | | |
|----------------------|----------------------|
| 가) 소방정·지방소방정 : 4년 | 나) 소방령·지방소방령 : 3년 |
| 다) 소방경·지방소방경 : 3년 | 라) 소방위·지방소방위 : 3년 |
| 마) 소방장·지방소방장 : 2년 | 바) 소방교·지방소방교 : 1년 6월 |
| 사) 소방사·지방소방사 : 1년 6월 | |

2)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적용의 특례

- 가) 순직자,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의 경우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적용을 배제한다.
- 나) 기타 특별승진의 경우 :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3분의 2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방법

가)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1) 휴직기간
- (2) 직위해제기간
- (3) 징계처분기간
- (4)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나)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 (1) 당해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 (2)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장·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이를 기간에 산입하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자에 대하여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휴직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 (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1년이내)
 - (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으로 인한 휴직(복무기간)
 - (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됨으로 인한 휴직(복무기간)
 - (라)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채용기간)
 - (마)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정)

- (바) 해외 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5할 인정)
- (4) 직위해제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직위해제된 기간
 - (가) 징계의결요구중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함)
 -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함)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되는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 (5) 시보임용중의 기간
- (6)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서 수습한 기간은 소방령, 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
- (7) 강등되거나 강임된 사람이 강등 및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할 기간은 강등 및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할 연수에 포함한다.
- (8)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原)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할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할 연수에 포함한다.
- (9)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간중 해당계급에서 1년이하의 근무기간은 전부 산입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간에 포함한다.

다)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기준일

- (1) 시험승진의 경우 : 제1차 시험일
- (2) 심사승진의 경우 :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 (3) 특별승진의 경우 : 승진임용예정일

나. 승진심사대상에서 제한(제외)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1) 승진심사대상에서 제한(제외)되는 자

- 가)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 (1) 강등·정직 : 18월
- (2) 감봉 : 12월
- (3) 견책 : 6월

다)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종료일로부터 18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근신, 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입교육 및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마)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소방장, 지방소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바)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2) 승진임용제한기간의 승계 :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기산한다.

3) 승진임용제한기간의 단축 :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다. 심사승진의 경우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예정인원수의 4배수내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2절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 평정

1. 근무성적평정

가. 평정대상 :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

나. 평정시기 :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평정사항(항목)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 등에 대하여 평정한다.

라. 평정결과의 활용

승진·전보·특별승급·성과상여금지급·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평정방법

1) 평정점 : 총 50점 만점으로 평정하되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는 각각 25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하고,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2) 평정점의 분포비율

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권자의 단위부서별 피평정자의 수가 적어 다음 분포비율이 불합리하면 평정권자의 단위부서를 통합하여 평정할 수 있다.

- (1) 수 (46점이상 - 50점) : 2할
- (2) 우 (38점이상 - 46점미만) : 4할
- (3) 양 (28점이상 - 38점미만) : 3할
- (4) 가 (28점미만) : 1할

나) “가” 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3) 평정결과의 비공개 :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1) 설치기관 : 승진대상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둘 수 있다.
- 2) 설치목적 : 근무성적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소정의 분포비율에 맞지 아니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함.
- 3) 위원회의 구성 :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구성
- 4) 조정방법
 - 가)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소정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다.
 - 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한다.
- 5) 재조정 요구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 1)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 2) 소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 3) 소방공무원이 6월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 4) 전보된 자의 평정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 5) 정기평정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의 평정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 다만, 강임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 6) 국가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의 평정
교류임용전의 근무성적을 당해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아. 평정권자

근무성적평정의 평정권자(제6조 관련)

직 급		소 속	1 차 평 정 자	2 차 평 정 자
국 가 직	소방정	소방방재청	소속국장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단	소방정책국장	차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시·도 본부장	차장
	소방령	소방방재청	소속 과·팀장	소속국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정책국장
		중앙119구조단	중앙119구조단장	소방정책국장
	소방경 이하	소방방재청	소속 과·팀장	소속 국장 (직속부서는 차장)
		중앙소방학교	소속 과·실장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단		소속 팀장	중앙119구조단장	
지 방 직	지방 소방정	소방관서	시·도 소방본부장	부시장 또는 부지사
	지방 소방령 · 지방 소방경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서장	
		지방소방학교	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지방 소방위 이하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소속 부서장 (과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부서장(과장 등)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비고 :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지방소방위 중 본인이 부서장(안전센터장, 구조대장 등)인 경우 그 부서장의 1차 평정자는 인사주무과장(소방행정과장)이 된다.

2. 경력평정

가. 평정대상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

나. 평정시기

- 1) 경력평정 : 연2회 실시하되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재 평정 : 경력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경력을 재 평정하여야 한다.

다. 평정방법

- 1)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구분	계급	연수	월별점수	연수별 점수					
기본 경력	소방정·지방소방정	4년	0.541점	연수 점수	1년 6.49	2년 12.98	3년 19.48	4년 26.00	
	소방령·지방소방령 소방장·지방소방장	4년	0.458점	연수 점수	1년 5.50	2년 10.99	3년 16.49	4년 22.00	
	소방교·지방소방교 이하	3년	0.611점	연수 점수	1년 7.33	2년 14.66	3년 22.00		
	소방정·지방소방정	3년	0.111점	연수 점수	1년 1.33	2년 2.66	3년 4.00		
	소방령·지방소방령	5년	0.050점	연수 점수	1년 0.60	2년 1.20	3년 1.80	4년 2.40	5년 3.00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4년	0.062점	연수 점수	1년 0.74	2년 1.49	3년 2.23	4년 3.00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교·지방소방교	3년	0.083점	연수 점수	1년 1.00	2년 1.99	3년 3.00		
	소방사·지방소방사	2년	0.125점	연수 점수	1년 1.50	2년 3.00			

* 비 고 : 월별점수에 근무한기간(월)을 곱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과 동일하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한다.

3) **경력의 조회 확인 및 재 평정**

- 가) 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 나) 경력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하여야 한다.

라. **평정자와 확인자** : 평정자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경력·교육훈련성적 및 가점 평정자와 확인자(제11조 관련)

기 관 명	평 정 자	확 인 자
소방방재청	소방인사담당	소방정책과장
중앙소방학교	소방인사담당	행정지원과장
중앙119구조단	소방인사담당	행정지원팀장
특별시·광역시·도	소방인사담당(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지방소방학교	소방인사담당	인사담당과장(지원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인사담당	인사담당과장
소방서	인사(행정)담당	소방(행정)과장

3. **교육훈련성적 평정**

가. **평정대상 및 평정점**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전문능력에 대해 총 25점 만점으로 하되,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평정대상 성적과 그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 1) 소방정·지방소방정 : 지휘역량교육성적(10점)
- 2)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 : 지휘역량교육성적(6점),
전문교육성적(6점), 직장훈련성적(6점) 및 체력검정성적(7점)
-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 전문교육성적(6점), 직장훈련성적(6점),
체력검정성적(7점) 및 전문능력성적(6점)

나. 평정시기

- 1) 정기평정(연2회) :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 2) 수시평정(수시) : 정기평정이후에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승진대상자명부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다. 평정방법

- 1) 지휘역량교육성적 : 지휘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
 - 가) 소방정·지방소방정 : 10점
 - 나)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 : 6점
- 2) 전문교육성적 : 전문교육과정 수료점수를 합산하여 부여
(총 6점이하의 평정점부여)
 -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신입교육 및 전문교육과정
 - 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외부 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직무관련 전문교육과정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과정(해당 계급에서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 3) 직장훈련성적 : 연2회(6.30, 12.31), 정기평정일 기준 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
 - 가)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나)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 체력검정성적 :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성적을 평가한 평정점.
 - 가)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6월이내에 해당계급에서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나)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6월 이내에 해당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 전문능력성적 :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자격 취득·보유에 대한 평정점
- 6) 평정점 계산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세자리 에서 반올림

라.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의 경우와 같다.

4. 가점 평정

가. 가점평정 사유

- 1)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2)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 3) 격무·기피부서 및 특수지에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 4)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나. 가점평정 방법

- 1) 가점평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당해계급에서 취득 또는 근무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 2) 가점평정의 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0.5점, 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0.5점, 격무·기피부서 및 특수지에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2.0점,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시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2.0점을 합산한다.

- 3) 격무·기피부서 및 특수지 근무에 의한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 4)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되,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5. 근무성적평정표등의 제출

- 가. 제출대상 서류 :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 경력평정표, 교육훈련성적평정표
- 나. 제출기일 등 : 평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
- 다. 평정결과의 통지 :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경력평정결과와 교육훈련 성적평정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절 승진대상자명부 등

1.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 가. 작성대상 : 승진요건을 갖춘 소방정·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
- 나. 작성권자
 - 1) 소방방재청장 :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 및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 2)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단장 : 소속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
 - 3) 시·도지사 : 지방소방공무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장이하는 제외)
 - 4)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 : 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다. 작성 기준일 : 매년 1월 1일 과 7월 1일

라. 작성기준

1) 계급별로 작성

2) 소방정·지방소방정은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3) 근무성적평정점은 계급별로 다음의 각호의 비율로 반영한다.

가) 소방정·지방소방정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times 60/50

나)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다)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2년 이내에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4)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중 직장훈련성적 평정점은 계급별로 다음의 각호의 비율로 반영한다.

가)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 최근 3년 이내 해당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 최근 2년 이내에 해당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5)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중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은 계급별로 다음의 각호의 비율로 반영한다.

가)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 최근 3년 6개월 이내 해당계급에서 최근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6)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

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점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7)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산정

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8)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산정

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 (그 직후

- 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 평정점이 있는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 9)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동점자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2)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3)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4) 고령자

* 위 순위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2. 승진대상자통합명부 작성

가. 작성대상 :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관할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

나. 작성권자 : 관할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다.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라. 작성기준 :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3. 승진제외자명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

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 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3조 제3호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4.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가. 조정사유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국가·지방소방공무원간 교류임용을 포함)
- 2)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 3)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 4)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 5)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 재 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나. 조정기준일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

5.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

가. 삭제사유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한다.

- 1) 승진임용된 경우
- 2)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 3) 퇴직하는 경우

4)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5) 승진임용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삭제기준일 : 당해 삭제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삭제한다.

6.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발생

가. 명부작성시 : 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 명부조정·삭제시 : 명부의 조정·삭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제출

가. 명부작성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명부조정·삭제시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절 심사승진

1. 승진심사 횟수 등

연2회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승진심사 실시 후에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선발된 인원이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소방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승진심사 대상

승진심사는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 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예정 인원수의 4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3. 승진심사 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한 승진심사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4.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가. 위원회의 설치

1) 승진심사위원회

가) 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기관

-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소방방재청
-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및 시·도

나) 관 할

-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가) 소방방재청, 시·도 : 소방정 이하에의 국가소방공무원 및 소속지방소방공무원 승진심사
 - (나) 중앙소방학교 : 소방위 이하에의 승진심사

다) 구 성

(1) 위원

- (가)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위원장 포함한 5인이상 7人以下
- (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 다만, 지방소방준감으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간사 및 서기 : 간사 1인, 서기 약간인

(3) 위원의 중복임명 제한 : 승진심사기간중에 2이상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원의 자격 (승진임용규정 제18조)

(가)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한다.

(나) 소방방재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다) 시·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라) 중앙소방학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마) 소방기관의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2) 보통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 : 소방기관별(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제외)설치

가) 기능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나) 구성 : 지방소방위 이하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사전심의회에 소방기관별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

나. 위원회의 운영

1) 승진심사위원회

가) 회의소집 :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나) 회의진행 및 의결 :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1) 서약서 제출

심사위원, 간사 및 서기는 개회와 동시에 소정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입제한 및 외부와의 연락 금지

심사위원,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심사수칙의 주지

간사는 승진심사 개시전에 심사수칙을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하게 하여야 한다.

(4) 행위, 언어의 제한

간사와 서기는 당해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 : 승진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승진 심사의 실시

가. 심사요소

- 1) 근무성과 : 현계급에서의 근무·경력·교육훈련성적평정 등
- 2) 경험한 직책 :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 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나. 심사요소의 평가방법 및 기준

- 1) 객관평가 대상 : 근무성과(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 등), 경험한 직책(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 2) 위원평가 대상 :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다. 심사절차

1)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가) 제1단계 심사는 사전심의 단계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위원평가 요소를 평가한다.

- (1)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사전심의표**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 (2) (1)에서 평가된 위원들의 점수를 **승진심사 사전심의 위원점수 집계표**(별지 제7호의 3서식)에 의하여 집계한 후 **보정지수**(객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를 적용하여 환산점수를 계산
- (3) (2)의 **심사환산점수**와 **객관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심사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별지 제7호의 4서식)을 작성하여 **제2단계 심사에 회부**

나) 제2단계 심사는 **본심사 단계**로 제1단계 사전심의에서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에 따른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한다.

2) 승진심사결과의 보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종합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가) 승진심사의결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나) 승진심사종합평가 결과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다) 승진(임용예정자, 심사탈락자)명부(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6.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가.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나.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 1) 승진임용후보자의명부 순위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임용한다.
- 2)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 5할씩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안분하여 임용하되,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5절 시험승진

1. 시험실시 기관

가. 중앙소방학교장

소방령·소방경 및 소방위예의 승진시험(소방방재청장의 승진시험 실시권한을 위임)

나. 시·도지사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예의 승진시험(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의 조정을 받아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예의 승진시험의 실시를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해당 계급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가.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3. 시험시행 및 공고

가. 응시서류의 제출

- 1) 응시하고자 하는 자 : 응시원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
- 2) 소속기관장 : 승진시험요구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함

나. 시험의 실시

1) 시험의 방법

-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병과할 수 있다.
- 나) 제2차시험 : 면접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2) 단계별 응시제한

- 가)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제1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필기시험과목

필기시험의 과목은 다음 표와 같다.

소방공무원승진시험의 필기시험과목(시행규칙 제28조관련)

구 분	과목수	필기시험과목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 승진시험	3	행정법, 소방법령 I·II·III, 선택1(행정학, 조직학, 재정학)
소방위·지방소방위 승진시험	3	행정법, 소방법령IV, 소방전술
소방장·지방소방장 승진시험	3	소방법령II, 소방법령III, 소방전술
소방교·지방소방교 승진시험	3	소방법령 I, 소방법령 II, 소방전술

비고

- 1. 소방법령 I : 소방공무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소방법령 II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3. 소방법령 III :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4. 소방법령 IV :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5. 소방전술 : 화재진압·구조·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기술 및 기법 등

4) 시험의 합격결정

- 가) 제1차 시험 :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 나) 제2차 시험 :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 교육훈련성적, 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성적의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10퍼센트, 및 당해 계급에서 최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퍼센트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차 시험성적을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다.
- 라) 동점자의 합격자결정 :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 (1)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3) 해당계급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4) 연령이 많은 사람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5. 시험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 승진임용 하되,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6절 특별승진

1. 승진대상 및 계급의 범위

가. 순직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자는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나.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정려 공적자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방령·지방소방령이하의 계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당해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에 한함)

다. 직무수행능력 탁월로 소방발전 공헌자

소속기관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소방령·지방소방령이하의 계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당해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에 한함)

라. 창안등급 동상 이상 받은 소방발전 기여자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자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는 소방령·지방소방령이하의 계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당해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에 한함)

마. 20년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하는 공적자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모든 계급에 승진이 가능하다.

※ “나”. “다”. “라”의 특별승진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이상이 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행하며, “마”의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행한다.

2. 승진임용 횟수 및 시기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3. 특별승진심사

가. 특별승진심사의 관할

- 1) 소방방재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국가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 2) 시·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나. 승진심사의 방법

1) 공적사항 등 관련자료 제출

- 가)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승진심사대상 소방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방법

가)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 투표로서 한다.

나)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 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 특별승진심사의 생략(승진임용규정 제42조 3항 신설 07.1.5)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를 승진시키는 경우

다. 특별승진임용예정자의 승진임용

1)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의 작성 :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의 우선 승진임용 : 특별승진임용예정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7절 근속승진제도

1. 대상계급 및 재직년수(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

가. 소방교·지방소방교 근속승진임용 : 소방사·지방소방사 5년

나. 소방장·지방소방장 근속승진임용 : 소방교·지방소방교 6년

다. 소방위·지방소방위 근속승진임용 : 소방장·지방소방장 7년 6개월

라.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임용 : 소방위·지방소방위 12년

2. 방법 및 절차

가.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 분기 1회

나. 소방위·지방소방위 : 반기 1회

3. 근속승진(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가.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경우

- 1)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점점이 37.5점 이상인 자
- 2) 1)의 상위 6할에 해당하는 자
- 3) 근속승진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

나.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 가. 1)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8절 대우공무원제도

1. 대우공무원 선발

가. 대우공무원 선발대상

소방공무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이하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 선발 절차 및 시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대우공무원 수당과 자격상실

가. 대우공무원 수당지급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 5 장 신분보장

제1절 신분조치

1. 신분보장의 원칙

- 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국가공무원법 제68조) :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규정(지방공무원법 제60조) :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사.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운 영 사 례

○ 형 확정으로 인한 당연퇴직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은 동법 제31조에 규정된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로부터 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중에 있던 자가 항소를 취하하였다면, 동 항소를 취하한 날에 형이 확정되므로 동 일자를 당연퇴직일로 하여야 할 것임

○ 지방공무원 결격사유가 신규임용 후에 발견된 경우의 인사처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 임용전에 발생한 공무원임용결격사유(법 제31조 해당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동 임용행위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행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며, 이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당초의 임용행위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함

○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의 효과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파면 등과 같은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3. 직권면직

가. 직권면직 사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4)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 5) 직위해제 처분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 6)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 인사위원회 등의 사전 의견참작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으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에 의한 직권면직일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4. 휴 직

가. 휴직의 사유 및 기간

- 1) 직권휴직 :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1년(공무상 질병 공상 3년)이내
 - 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복무기간 종료시 까지
 - 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 3개월 이내
 -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전임기간
 -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 2) 청원휴직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라)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 가)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채용 기간(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 나) 해외 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 2년 이내
 - 라)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여자공무원의 경우는 3년 이내)
 - 마)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 바)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나. 휴직중인 공무원의 신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 복귀신고 및 복직

- 1)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어 복귀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 3)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5. 직위해제

가. 직위해제 사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사람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직위해제자의 대기명령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와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직위해제사유가 경합된 경우의 직위해제처분

공무원이 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와 ②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경우 또는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②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경우 또는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자의 직위부여

직위해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6. 강 임

가. 강임의 사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할 수 있다.

- 1)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 2) 본인이 동의한 경우

나. 강임된 공무원의 우선임용

- 1)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승진시험, 승진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진 후보자명부의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 2)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다. 강임의 범위

소방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2절 정년

1. 정년의 구분

가. 연령정년 : 60세

나. 계급정년

- 1) 소방감·지방소방감 : 4년
- 2)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 6년
- 3) 소방정·지방소방정 : 11년
- 4) 소방령·지방소방령 : 14년

2. 계급정년의 계산

가. 계급정년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속여부를 불문하고 국가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에 근무한 연수를 산입한다.

나.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 지방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계급별 정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각에 따른다.

-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정년퇴직 발령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3절 징 계

1. 징계의 사유 등

가. 징계의 사유

1)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

- 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나)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다)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

-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 나)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 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감사원법상의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4) 상기 사항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 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2010. 3. 22신설]

나. 징계사유의 승계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 징계사유의 시효

- 1)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2)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의 징계사유의 시효는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 3)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다. 공무원신분의 배제 여부에 따라 배제징계(파면, 해임)와 교정징계(강등, 정직, 감봉, 견책)로 구분하고, 징계양정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가. 중징계

- 1) 파 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하는 징계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 자격이 제한된다.
- 2) 해 임 : 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하는 징계로서 처분일로부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 자격이 제한된다.
- 3) 강 등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

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4) 정 직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중 보수의 3분의2를 감하는 징계로서 일정기간 승진임용 및 승급이 제한된다.

나. 경징계

- 1) 감 봉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중 보수의 3분의1을 감하는 징계로서 일정기간 승진임용 및 승급이 제한된다.
- 2) 견 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로서 일정기간 승진임용 및 승급이 제한된다.

※ 훈계, 경고, 계고, 엄중주의, 권고 등은 문책의 성격을 가진 교정수단인 점에서 견책과 유사하나 징계의 종류는 아니다.

3. 징계위원회

가. 설치기관

국무총리실(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방방재청, 시·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되는 징계위원회는 3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2)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 가)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나)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의 임명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 계급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위원이 될 소방공무원의 수가 법정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속 6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위(3)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가) 소방방재청 및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지방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나)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단·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이상 근무한 사람

-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5) 간사의 임명

징계위원회에는 간사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다. 징계위원회의 관할

소방준감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하며,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다음과 같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1)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 가) 소방령 및 소방정 국가소방공무원의 징계사건
- 나) 소방방재청 소속 국가소방공무원의 징계사건

2)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 가) 지방소방경 이상,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사건
- 나)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소속 지방소방위 이하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사건은 제외

3) 중앙소방학교징계위원회 : 소속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징계사건

4) 중앙119구조단징계위원회 : 소속 소방위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 징계사건

5)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 징계위원회 : 소속 지방소방위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사건

라. 관련사건의 관할

1) 임용권자가 동일한 2인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

가) 그중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나) 각자가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기관을 정할 수 없는 징계사건

가) 소방서간의 2인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나) 시·도간의 2인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4. 징계의 절차

가. 징계의결의 요구

1) 징계의결 요구권자

가) 소방준감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 : 소방방재청장

나)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지방소방공무원 : 당해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2) 징계의결 요구방법

가)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의 신청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 (2) 확인서(소방공무원징계령 별지 제1호의 2서식)
-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 (6)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나)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의결 요구의 기준 및 감경·경합·가중

가)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징계양정기준) 및 별표2(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를 따른다.

징계 양정 기준

(소방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소방방재청훈령 제182호 별표1 09. 7. 17)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가.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 엄수의무위반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마.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금품·향응수수 관련 문책기준

(소방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소방방재청훈령 제182호 별표4 09. 7. 17)

비위·수수 유형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견책	감봉·정직	정직·강등	해임·파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의례 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정직	정직·강등	해임·파면			
	능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 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강등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강등·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능동	정직·강등 ·해임	파면					

※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횡수가 많은 경우, 소방사법 사건 무마용인 경우 및 인사 청탁 관련 수수
인 경우는 징계양정을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음

나) 감독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

감독자를 문책할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결과에 따라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행위자의 비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소방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2 09. 7. 17)

업무의 성질 \ 업무와의 관련도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비고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다)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사유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1. 대형화재·사회이목이 집중된 소방업무에 관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
2.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기여한 경우
3. 비위의 원인이 능동적 직무수행에 있고 자진신고 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비위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어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

감독자(문책순위 1에 해당하는 자 제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상 참작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위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행위자의 비위가 근무시간 이외 또는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위자의 비위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행위자에 대해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 또는 특별교양,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비위라도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비위가 3회 이상 연속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라) 경합 및 가중사유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수종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행위자(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감독자 문책 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야기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징계사건의 통보

1)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이 아닌 소방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1)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가)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다) 그 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 3)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 4)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징계사유를 통보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다.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 1) 징계위원회가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심의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때에는 따로 출석통지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 2)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 3)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 4)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1회이상 출석통지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 5) 징계심의대상자의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 6)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출석통지는 관보(시·도의 경우에는 공보)에 의하여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7)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8)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하는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심문과 진술

- 1) 징계심의대상자 및 관계인의 심문 :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행하는 외에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 2)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진술의 기회부여 :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3) 증인심문신청 및 채택 :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4) 징계의결요구자 등의 진술 : 징계의결을 요구한자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5) 징계위원회의 사실조사 등 :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마. 징계위원의 제척 및 기피

- 1) 징계위원의 제척 :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심의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2) 징계위원의 기피
 - 가)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나) 징계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3)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한 징계위원의 보충임명
 - 가) 징계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보충임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위원을 보충임명 하여야 한다.
 - 나)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한 징계위원의 보충임명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를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바. 징계위원회의 의결

- 1) 의결기한 :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2) 의결방법 : 징계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당한 의견으로 본다.

※ 의견분립시 양정결정 방법 예시

징계위원 7인이 출석하여 파면 1명,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3월 1명, 감봉 3월 3명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정직 3월로 의결됨

사. 징계의 양정

1) 징계양정 기준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경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제2항)

2) 징계의 감경

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차관급상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나)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현장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 성실하고

-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양정 감경기준(제10조 관련)

(소방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09. 7. 17)

구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1	파면	해임
2	해임	강등
3	강등	정직
4	정직	감봉
5	감봉	견책
6	견책	불문(경고)

3) 징계의 가중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수종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행위자(감독자 문책 할 때는 적용하지 않음)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다시 비위를 야기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 후단)

4) 감경 가중 사유의 기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

아. 징계의결의 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자.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징계의 집행

가. 집행기관

1) 국가소방공무원 : 당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 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방재청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당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행한다.

2) 지방소방공무원 : 당해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감봉 및 견책은 소방서장이 행한다.

나. 집행방법

1) 징계의 집행은 징계의결의 통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처분의 제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 서식(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 2)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고 받은 경우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그 집행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 집행결과의 보고 및 통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임용권자와 징계집행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집행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심사청구(소방공무원법 제21조)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각각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마. 행정소송의 피고(소방공무원법 제25조)

징계처분이나 휴직·면직처분 기타 의사에 반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지방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다만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부 록

1.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2.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3. 소방공무원 임용령
4. 소방공무원 시행규칙
5. 소방공무원 징계령
6.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7.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정 2010. 3. 2. 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및 외근부서의 근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근근무”란 화재,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교대제 근무와 소방업무의 특유한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2. “외근부서”란 외근근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휴무”란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일정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4. “당번”이란 교대제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날 또는 일정한 시간을 말하며,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포함한다.
5. “비번”이란 교대제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6. “휴게시간”이란 근무일에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7. “일근제 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복무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8. “상시근무”란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긴급하고 중대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각급 소방기관에서 외근근무를 하는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지침) ①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근무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근근무의 정원은 소방서의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충원
2. 외근근무의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능률적으로 수행
3. 외근근무요원의 교육훈련의 강화 및 비번활동의 최소화
4. 외근근무요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 및 의욕고취
5. 외근근무의 적정수행 및 고충해소를 위한 지도방문 실시

② 소방기관의 장은 비번자 동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비번 자를 동원할 경우에는 동원시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외근근무자의 자세) ① 외근근무자는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외근근무자는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상황근무에 임할 때 사용할 개인장구와 무전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제6조(외근근무의 계획) ①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월간 외근근무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근근무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근무량, 근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부서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준하는 일과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별, 계절별, 근무형태별 특수성에 따라 일과표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외근근무의 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시·도의 지역실정, 인력환경, 업무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근근무의 범위와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근근무의 범위와 근무인원을 조정하는 경우 그 범위 및 근무방식에 관한 사항은 상급 소방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동원)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방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방공무원을 동원할 수 있다.

1. 대형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발령한 때
2. 재난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때
3. 그 밖에 중요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력 증원이 필요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명확히 하여 당번 근무자, 일근제 근무종료 자 순으로 소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 자를 동원할 수 있다.

제2장 외근부서의 운영

제1절 119안전센터의 운영

제9조(119안전센터의 장) ① 119안전센터에는 관할내의 소방업무의 총괄지휘 및 책임자로서 119안전센터의 장을 둔다.

② 119안전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일일근무계획 및 직원의 근무지정
2. 근무지시, 직장교육·훈련 실시
3.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및 작전수행
4. 근무의 지도감독 및 확인
5. 근무자의 장비 및 시설점검
6. 소방활동에 대한 대민홍보
7. 관내의 순찰과 상황파악
8. 직원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환경 조성

③ 119안전센터의 장의 근무는 일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기관의 장은 119안전센터의 장에게 소방력이 부족하거나, 소방업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 현장상황근무 또는 상황관리근무 등을 위하여 당번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119안전센터의 장의 자세) ① 119안전센터의 장은 법령 또는 명령, 지시 등을 솔선하여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119안전센터의 장은 관내의 소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119안전센터의 장의 근무지정) ① 119안전센터의 장은 119안전센터 직원의 일일 근무의 목표량(시간, 회, 건명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119안전센터의 장은 중요한 지시사항 및 관할구역내의 돌발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일일근무의 목표량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조장) ① 소방기관의 장은 119안전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119안전센

터의 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교대제 근무조별 각각 1명씩의 조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선임 팀장은 119안전센터의 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119안전센터 근무방법) ① 119안전센터에서의 교대제 근무는 3교대제(3조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소방력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소방업무량을 고려하여 2교대제(2조 1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소방력 현황을 고려하여 119안전센터 직원 중 일부를 일근제 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조별 교대시간과 교대방법 및 그밖에 교대근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절 그 밖에 부서의 운영

제14조(구조대) ① 일반구조대와 특수구조대(이하 ‘구조대’라고 한다)에는 구조대장을 둔다.

② 구조대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처리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하여 현장상황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구조대장은 현장상황근무와 관련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조대장은 지체 없이 소속 소방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구조대 소속 근무요원에 대하여 현장상황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소방정대)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정 등을 이용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방정대에 소방정대장을 둔다.

② 소방정대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처리 방식과 절차에 따라 현장상황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소방정대장은 현장상황근무와 관련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방정대장은 지체 없이 소속 소방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소방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정대 소속 근무요원에 대하여 현장상황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소방항공대)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헬기 등을 이용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방항공대 또는 항공구조대(이하 '소방항공대'라고 한다)를 운영한다.

② 소방항공대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처리 방식과 절차에 따라 현장상황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소방항공대에서 소방헬기를 운항할 때에는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방항공기 운항통제관의 통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항공대 소속 근무요원에 대하여 현장상황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종합상황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때는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근무요원에 대하여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본 절의 부서의 운영 및 그 밖에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절 '119안전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외근근무 사항

제19조(외근근무의 종류) 외근근무는 현장상황 근무와 일반적 근무 및 특수한 근무로 나눈다.

제1절 현장상황 근무

제20조(출동대비) ① 외근부서의 장은 119신고 및 지시에 따른 출동 등 소방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차량별로 당번자 중에서 운전요원·진압요원·구급요원·구조요원(이하 "현장상황근무자"라고 한다)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상황 근무자는 현장출동을 대비하여 출동지령을 받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개인장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 또는 소방차량의 근접거리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③ 출동대비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출동대비 근무 지정현황을 그 시간별로 제48조에 따라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화재진압 등) ① 진압요원은 화재 발생시에 신고 또는 종합상황실의 지령을 받아 지체 없이 출동하며 인명검색, 연소(延燒) 확대의 방지 및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운전요원·구급요원·구조요원 등에게 화재진압업무의 숙련정도에 따라 진압요원과 함께 또는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 할 수 있다.

③ 화재 및 재난의 현장에서 진압요원 및 진압보조요원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 및 현장의 최상급 감독자(이하 '소방대장 등'이라 한다)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제22조(구급업무) ① 구급요원은 구급환자가 발생한 때 신고 또는 종합상황실의 출동지령을 받아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자를 응급처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급요원은 소방대장 등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제23조(구조업무) ① 구조요원은 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의 신고 또는 종합상황실의 출동지령을 받아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출동하여 인명구조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② 구조요원은 소방대장 등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제24조(소방대장 등의 업무) ① 소방대장 등은 출동 중인 각각의 요원들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소방대장 등은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 중 발생한 중요한 상황에 대하여는 상급 감독자·소방기관의 장 또는 종합상황실에 즉시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장상황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 그 현장에서 출동차량별로 인원, 장비 등의 현황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의 소방대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일반적 근무

제25조(민원행정) ① 외근부서의 장은 외근근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민원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소방기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민원의 접수 및 수리

2. 공문 또는 전자문서의 접수 및 처리
 3. 민원업무의 안내 및 홍보
 4. 소방차량 출동시의 교통정리 및 보호 업무
 5. 청사내의 화기 및 보안단속, 사무실별 보안점검 업무
 6. 교양, 지시, 그 밖에 행정실에서 행하는 제업무의 기록
- ② 제1항에 따라 민원행정근무를 수행하는 자가 일근제 근무자인 경우에, 외근부서의 장은 야간에도 제1항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근무자 중 1인을 지정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6조(장비관리) ①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장비를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소방장비의 운용 및 운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점검, 수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소방장비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소방장비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 ②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장비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한다.

제27조(전산통신) ①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전산시설과 유무선 통신시설 및 소방정보통신시설을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유무선 통신시설과 전산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주간 또는 야간 유무선 통신시설 수·발신에 관한 사항
 3. 통신의 난청 또는 전산의 불통에 대비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전산시설과 통신시설의 점검, 수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② 외근부서의 장은 무선 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방전산시설과 통신시설에 대하여 「소방장비관리규칙」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8조(경계근무)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재난의 예방과 현장상황근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경계지역에 대한 순찰 및 사전 점검
 2. 현장상황 발생 대비한 소방장비 및 출동장비의 점검
 3. 화재·재난 취약지역에 거점별 배치 또는 대기
 4. 각종 행사 시 요인의 신변보호 및 피난유도 임무
 5. 각종 행사 시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사고 방지 활동
- ② 외근부서의 장은 외근근무자가 경계근무 수행할 때에는 경계근무 계획을 수립하여 시간당 과업을 부여하여야 하고, 단순 대기성 근무인원 보강을 최소화 하며 제30조에 따른 예방순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소방교육·훈련)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인명대피, 현장 상황대처 및 소방차량 조작훈련, 소방장비 사용 등에 관한 자체 소방훈련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 ② 외근근무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기술향상을 위해 단체 직무교육 및 전술훈련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외근부서에서 주민에 대한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 하여 지도한다.

1. 화재의 통보·피난유도의 방법의 지도
2. 소방시설 또는 소화용수 설비의 사용방법과 실습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 응급조치의 요령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관련 유관기관의 상호 역할 및 공조에 관한 사항

제30조(예방순찰)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도보 및 기동순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순찰노선과 순찰회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③ 기동순찰은 순찰차 또는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순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3.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①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용수조사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소방용수의 위치 파악 및 수리표지판의 설치여부
2. 구조 및 용량, 수압, 수심, 수량의 감수 여부
3. 지반과 수면과의 거리, 토사매물 또는 시설의 고장여부
4.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② 외근부서의 장은 출동에 장애가 되는 도로상황, 건물의 개황 및 그 밖의 소방상 필요한 지리를 조사하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지리조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한다.

1. 각종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2. 관내 지리에 변동된 상황을 발견 시에는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의 조치사항

제32조(소방활동 자료조사) ① 외근부서의 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자료조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으로 처리한다.

1. 소방대상물 등의 위치·구조·피난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위험물이나 그 밖에 연소물질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소화활동 설비의 구조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활동 구역설정, 강제처분 및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
5. 소방차 부서, 소방시설 점령, 건물진입, 주변 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②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야 하며, 자료조사로 인하여 대상처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3조(소방홍보 및 지도) 외근부서의 장은 국민 또는 주민이 화재의 예방·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홍보 및 지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구조·구급 발생시 신고에 관한 사항
2. 화기단속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3. 자체 방화진단과 불안전요인의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정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지역적·계절적 방화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활동상 필요한 사항

제34조(소방정보수집) 외근부서의 장은 제반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실화 또는 방화 우려지역에 대한 첩보
2. 각종 소방사범과 그 방지책에 관한 정보
3. 화재예방 또는 연소방지 및 인명피해 경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5조(그 밖의 업무) 외근부서에서는 조회·문서체송·교육훈련 소집·유관기관 협의를 위한 출장 및 그 밖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근무를 할 수 있다.

제3절 특수한 근무

제36조(소방검사) ① 소방기관에 소방검사 전담부서 또는 전담요원을 두는 경우에 소방검사요원은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과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검사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검사요원을 2인 1조로 운영하며, 소방검사요원은 일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37조(화재조사) ① 소방기관에 화재조사 전담부서 또는 전담요원을 두는 경우에 화재조사요원은 소방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화재원인 및 피해를 조사하며,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한다.

②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의심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야 하고 소방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현장상황에 즉시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조사요원에 대하여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소방사범경찰) ① 소방사범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 내에서 소방사범에 대하여 인지, 조사, 송치 등 수사업무를 처리한다.

② 소방사범경찰관리는 형사사법 절차 및 「사범경찰관리집무규칙」을 준수하여 상대방

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법경찰업무수행을 위하여 2인 1조(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운영하고,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상황관리) 전산·통신요원 또는 상황요원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의 책임 하에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0조(교육지도) ① 중앙·지방 소방학교장은 소방교육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자에 대한 생활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지도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중앙·지방 소방학교의 장은 교육지도요원에 대하여 소방업무상 필요한 경우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근무시간 및 휴무 등

제41조(근무시간) ① 소방기관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대제 근무자가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관서의 외부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무명령에 따라 지정된 근무시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42조(휴게시간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매 8시간마다 4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일정 시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지정된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업무수행 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거나 감축하거나 또는 출동대비 근무를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3조(시간외근무 및 보상) ① 소방기관의 장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41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하며, 비번자의 동원근무를 포함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명한 때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2교대제 근무자의 특례) 소방기관의 장은 2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는 순번을 정하여 2월 3회(1회 1근무일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교대제 근무자 이외 자의 휴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8조에 따라 동원되어 외근근무를 한 교대제 근무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연일근무 및 공휴일근무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2. 야간근무(18:00~익일09:00)시는 다음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자가 휴무를 원하지 않거나 휴무를 하지 아니 한 것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휴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장 사기관리 등

제46조(실적평가와 포상) ①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방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소방관을 포상해야 한다.

② 우수소방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등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 3일 이상
2. 행정서비스 개선·대민업무 관련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2일 이상
3. 그 밖의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1일 이상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외근근무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담당업무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안전관리 등) ① 외근근무자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자와 부상의 정도가 심한 공상자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자가 희망하는 종류의 근무 또는 수행 가능한 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6장 문서관리 등

제48조(근무일지의 기록·보관) ① 외근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일지 작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근무일지의 서식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외근부서는 근무일지에 일일근무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근무 중 발생·처리한 주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외근부서는 근무일지를 월별로 모아 3년간 보관·관리(전자적 방법에 따른 보관·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9조(문서 통제·하달) ① 소방기관에서 외근부서에 대한 문서 하달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요약본(1~2매)만을 작성·결재하여 하달할 수 있으며, 원공문은 필요시 볼 수 있도록 전자결재 공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외근부서에 대한 문서하달을 가급적 억제하고 현장상황근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문서장부) ① 외근부서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서장부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할 문서장부는 관할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1조(보고사항) 외근근무 보고사항의 처리는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시행세칙

제52조(시행세칙) 각급 소방기관의 장은 외근근무의 범위와 근무조건 및 그 밖에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발령과 동시에 「소방공무원근무규정」(훈령 제3호)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전에 훈령·예규 등에서 「소방공무원근무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한다.

[별표 1]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2조 1교대 예시)

구분	시 간	근 무 내 용	비고
주간 근무	09:00~09:15	○ 교대점검 실시 ● 교대점검(인원 장비점검 및 업무 인수인계)	
	09:15~10:00	○ 스트레칭 및 심신안정프로그램 실시 ○ 당일 근무(반) 업무지시 및 출동분대 편성 ● 출동대별 소방 장비·장구 정비 점검 ● 안전관리 교육	
	10:00~12:00	○ 소방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행정업무 처리	
	12:00~12:40	○ 휴게시간(중식 및 휴식)	
	12:40~14:00	○ 개인별 행정업무 처리	
	14:00~16:00	○ 소방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행정업무 처리	
	16:00~17:00	○ 체력관리(체력향상 프로그램 시행)	
	17:00~18:00	○ 야간 소방장비 점검 및 시동점검, 환경정리	
야간 근무	18:00~18:40	○ 휴게시간(석식 및 휴식)	
	18:40~20:00	○ 안전관리 교육 및 체력관리	
	20:00~22:00	○ 소방 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개인별 행정업무 처리	
	22:00~06:00	○ 취약지역 자체 순찰활동 ○ 개인별 잔무처리 등 필요업무 및 출동대기 근무	
	06:00~07:20	○ 체력관리 및 환경정리	
	07:20~08:00	○ 휴게시간(조식 및 휴식)	
	08:00~09:00	○ 근무교대 준비 및 교대점검 실시	

- * 매주 목요일은 정례 장비·장구 정비일(교대점검 또는 오전 중)
- * 매월 첫째 금요일은 집무결연일(교대점검 또는 오전 중)
- * 소방 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은 화재 등 현장 활동과 연계된 훈련 위주로 운영
- * 출동 귀소 후 30분은 장비점검 실시

[별표 2]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3조 2교대 예시)

구분	시 간	근 무 내 용	비고
주간	09:00~09:15	○ 교대점검 실시 ● 교대점검(인원 장비점검 및 업무 인수인계)	
	09:15~10:00	○ 스트레칭 및 심신안정프로그램 실시 ○ 당일 근무(반) 업무지시 및 출동분대 편성 ● 출동대별 소방 장비·장구 정비 점검 ● 안전관리 교육	
	10:00~12:00	○ 소방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개인별 행정업무 처리	
	12:00~12:40	○ 휴게시간(중식 및 휴식)	
	12:40~14:00	○ 개인별 행정업무 처리	
	14:00~16:00	○ 소방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개인별 행정업무 처리	
	16:00~17:00	○ 체력관리(체력향상 프로그램 시행)	
	17:00~18:00	○ 근무교대준비 및 교대점검 실시 ● 소방장비점검 및 시동점검, 환경정리 ● 교대점검(인원 장비점검 및 업무 인수인계)	
야간	18:00~19:00	○ 당일 근무(반) 업무지시 및 출동분대 편성 ● 출동대별 소방 장비·장구 정비 점검 ● 안전관리 교육 ○ 스트레칭 및 심신안정프로그램 실시 ○ 개인별 야간근무 준비	
	19:00~22:00	○ 소방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개인별 행정업무 처리	
	22:00~23:00	○ 취약지역 자체 순찰활동	
	23:00~06:00	○ 개인별 잔무처리 등 필요업무 및 출동대기 근무	
	06:00~07:20	○ 체력관리 및 환경정리	
	07:20~08:00	○ 휴게시간(조식 및 휴식)	
	08:00~09:00	○ 근무교대 준비 및 교대점검 실시	

- * 매주 목요일은 정례 장비·장구 정비일(교대점검 또는 오전 중)
- * 매월 첫째 금요일은 집무검열일(교대점검 또는 오전 중)
- * 소방 활동상 필요한 교육훈련은 화재 등 현장 활동과 연계된 훈련 위주로 운영
- * 출동 귀소 후 30분은 장비점검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119안전센터) 근무일지

20 . . . 요일 (근무 팀 :)

담당	팀장	센터장

인 원	정원	현원	근무 인원	사 고 인 원								
				계	연가	병가	교육	출장	파견	공가	기타	
소방공무원	계											
	당번											
	일근(행정)											
	비번			-	-	-	-	-	-	-	-	-
의무소방 등												

차 량	총 대수	운행 차량	사 고 차 량				비 고
			계	고장	인원부족	기타	
계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기타							

○ 주요행사(소방력 동원)

행사명	시 간	장 소	동원 소방력		내 용
			인원	차량	

○ 근무자 현황(비번자 제외되나 비번동원이 있는 경우는 기재)

연번	계급	성명	근무유형	담당업무	서명	비고
1			센터장	총괄		
2			당번	진압, 구급		
3			당번	운전, 구조		
4			일근	행정		
			비번	행사동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

주요 지시사항							
당번(주간, 야간)				비번			
업무	근무시간	인원	비고	업무	근무시간	인원	비고

근무지정										
구분 \ 시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현 장 근 무										
출 동 대 비										
민 원 행 정										
장 비 관 리										
교 육 훈 련										
예 방 순 찰										
지 리 · 용 수 조 사										
자 료 조 사										
홍 보 지 도										
기 타 업 무										
소방검사화재조사										
휴 계										

※ 근무 지정된 자의 번호 또는 성명을 기재함 (2)

근 무 지 정														
구분 \ 시간	19	20	21	22	23	24	01	02	03	04	05	06	07	08
	20	21	22	23	24	01	02	03	04	05	06	07	08	09
현 장 근 무														
출 동 대 비														
민 원 행 정														
장 비 관 리														
교 육 훈 련														
예 방 순 찰														
지 리 · 용 수 조 사														
자 료 조 사														
홍 보 지 도														
기 타 업 무														
소 방 검 사 화 재 조 사														
휴 계														

※ 근무 지정된 자의 연번 또는 성명을 기재함.

구분	문서수발		화재진압		구조활동		구급출동		기동순찰		지리·용수조사		소방검사		기타	
	접수	발송	신고	출동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일계																
누계																

(3)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정 2010. 3. 2. 소방방재청 훈령 제19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과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직”이란 휴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근무를 말한다.
2. “비상상황”이란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소방수요가 발생하여 소방력을 동원하여 소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3. “지휘선상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위치 근무”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5. “필수요원”이란 비상소집 업무를 위하여 각급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 즉시 또는 유형별 상황에 따라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6. “가용소방력”이란 총원에서 병가, 휴가, 출장, 교육, 파견 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7. “소방관서”란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안전센터, 구조대 등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1절 통 칙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 및 상황당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 중에서 상황실 근무 보조, 현장지휘관의 업무 보조 및 그 밖의 소방활동 상 필요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상황당직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당직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무시간에 따라 각각 운영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직과 숙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외근부서의 교대제 근무시간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숙직 및 상황당직의 교대휴식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숙직 및 야간 상황당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으며, 1인인 때에는 소방관서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소방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0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 및 야간상황당직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의 명령 등) ① 당직근무 명령은 해당 소방관서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해당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당직의 신고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소방관서의 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상황)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교대하는 당직근무자간에 이를 인계·인수한다.

제7조(당직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리근무자와 교대하여야 한다.

③ 당직 근무자는 별표3에 따른 근무표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실의 위치) 소방관서의 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 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합상황실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소방관서별 당직근무

제9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의 편성은 소방관서의 장이 정하되 1인 이상으로 한다. 소방관서별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외근부서의 일근제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편성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소방관서가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는 경우와 건물이 인접한 경우 등 각 소방관서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부서 소속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상시근무 체제의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적 계속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방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교대제 근무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채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

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법·방호·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교대제 근무자와 정규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소방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화재, 외부 침입자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에 연락하고, 소속관서의 장이나 상급관서의 당직근무자·당직근무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관서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소방관서의 장이 당직실 또는 종합상황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 책임자의 임무) ① 소방관서별 당직근무 책임자는 해당 소방관서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당직근무자 및 하급 소방관서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한다.

② 당직근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 소방관서의 근무자 현황 및 출동 소방력 점검
2.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감독 또는 상황보고 등의 처리
3. 그 밖의 관할구역 내 소방활동 감독

③ 당직근무 책임자는 지휘계통을 통한 각종 상황보고 및 직원의 근무기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4.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손전등 등 비상조명기구
 7. 그 밖에 당직근무 및 비상소집 업무에 필요한 물품
- ② 소방관서에서 종합상황실과 당직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서류 및 물품은 종합상황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는 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소방관서의 장이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전산시스템으로 입력을 포함함)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3장 비상업무

제1절 비상근무

제13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① 비상근무는 재난상황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화재 비상
2. 구조·구급 비상
3. 그 밖의 재난 비상

② 비상등급은 재난 유형별 상황 및 사태를 기준으로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 1단계
2. 비상 2단계
3. 비상 3단계

③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목적과 기간을 명시한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경계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대비 인원 보강을 최소화하고 순찰 등 예방활동 위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의 종류와 등급, 등급별 동원할 소방력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체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소방업무 운영을 위하여 상급 소방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한다.

제14조(발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또는 2개 이상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지역 및 2개 이상 시·도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소방방재청장
2. 해당 시·도 전역 또는 2개 이상의 소방서 관할지역 및 2개 이상 소방서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 : 소방본부장
3. 단일 소방서 관할지역 : 소방서장

②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일시, 종류, 대상, 비상소집 등을 특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③ 비상근무 발령권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인 경우에는 비상근무 종류·등급, 발령시간, 발령사유, 기간, 소방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 등을 소방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요령) ①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하되, 불필요한 동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명확히 하여 발령 당시 근무자, 일근제 근무자, 교대제 근무 비번 자 순으로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역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미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비상근무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장배치와 대비근무의 교대 조를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연가를 억제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휴가, 공가, 병가, 출산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3조 제3항에 따른 특별경계근무를 하는 경우에 소방관서의 장은 정위치 근무를 하고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에 대비하여야 하며, 모든 소방공무원은 비상연락체계의 유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6조(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비상근무 해제시 비상근무 발령권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인 경우에는 6시간 이

내에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소방본부장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사항을 보고 받은 경우 상급 소방관서의 장은 비상근무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비상근무의 해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기간 중 당직) ①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 전원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의 장소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소방관서의 경우에는 그 소방관서 안에 당직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 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권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긴급구조통제단의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중앙·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및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비상소집

제20조(비상소집) ① 공무원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3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이를 종합상황실 근무자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신속히 해당 소방관서 및 소속기관에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락을 받은 해당 소방관서의 종합상황실 근무자 또는 당직근무자는 즉시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 소방공무원 중 비상소집대상자가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③ 비상소집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되, 비상소집 자동전파 장치, 유·무선 전화, 팩스, 방송 그 밖의 신속한 방법을 사용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인근 관할지역에 발생한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해당 관할지역 내에서 미리 비상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소속 소방공

무원에 대하여 경계강화 지시 또는 응원협정에 따른 단계별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응소)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집장소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 응소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명령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집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응소 또는 지휘선상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른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자체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응소자별로 담당 임무를 부여하고 현장출동,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집을 실시한 소방관서의 장은 그 비상소집의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상급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소집계획) ① 소방관서의 장은 비상소집에 대비하여 소속 소방공무의 연락체계, 응소방법 및 차량동원 등을 포함한 비상소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인원
2. 관내 소속별 또는 지역별 거주자 현황에 따른 차량 소요대수
3. 관내 기관의 위치와 도로망 현황
4. 자체 보유차량 대수
5.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관련 업종 종사자
6. 긴급 소방응원 협정 사항

제23조(소집훈련) ① 소방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비상소집의 취지와 소집전달 및 응소 요령
2. 비상소집 전달요령 및 소방력 출동 방법
3. 전출·입 및 변동사항 통보 의무와 책임
4. 비상함 비치 및 그 밖의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급 소방관서에 훈련의 목적, 인원, 훈련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연락체계의 유지

제24조(장거리 여행) ①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전까지 소방관서의 장은 상급 소방관서의 장에게, 직원은 소속 소방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2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기간 또는 특별경계근무기간 중에는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비상연락체계의 유지) ① 소방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용된 자와 숙소 및 부서를 이동(전·출입)한 자, 그 밖에 비상연락 체계를 변경 할 필요가 있는 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소관 부서에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필수요원을 지정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에는 상황전파자·문서보관자·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비상연락망의 정비·보완)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비상연락망(비상소집 자동전파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비상연락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연락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의 정비·보완을 위하여 책임자 및 보조자 각각 1인씩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응소 장소의 비상함) ① 소방관서에서 별도의 비상소집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갖춘 비상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체 비상소집 연락부 및 비상소집 응소부
2. 손전등 등 비상조명기구

3. 그 밖의 비상소집 업무에 필요한 비품

제4절 감 독

제29조(감독) ①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양과 감독을 실시하고 비상근무를 빙자한 직권남용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상급 소방관서의 장 또는 상급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한 자는 비상근무의 적정성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3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 소방관서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삭제) 이 규칙의 발령과 동시에 소방공무원근무규정(청 훈령 제3호) 중 '제3장 당직 및 상황근무'와 '제4장 비상근무'에 관한 부분은 이를 삭제한다.

[별표 1]

비상근무의 종류별 상황 및 사태

화재 비상	
1단계	1.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2. 화재로 소방수요가 증가하여 가용소방력의 30%이내 또는 필수요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단계	1.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 2. 사회적 이목의 집중이 예상되는 화재로 가용소방력의 50%이내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단계	1. 화재로 인한 대규모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로 가용소방력의 10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구급 비상	
1단계	1. 소요·테러·인적재난 등으로 소방질서의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소방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가용소방력의 30%이내 또는 필수요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단계	1. 대규모 소요·테러·인적재난 등으로 소방질서가 혼란하게 된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소방수요가 증가하여 가용소방력의 50%이내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단계	1. 대규모 소요·테러·인적재난 등으로 소방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된 경우 2.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소방수요의 급증으로 가용소방력의 10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재난 비상	
1단계	풍수해 등 주의보 또는 일부지역 경보 발령 및 그 밖의 재난으로 예방·대응 활동이 예상되어 필수요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단계	풍수해 등 경보 발령 및 그 밖의 재난으로 예방·대응 활동의 징후가 현저하여 가용소방력의 30%이내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단계	대규모 풍수해 및 그 밖의 재난 등으로 인한 예방·대응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용소방력의 50%이상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

비 상 근 무 계 획

1. 출동대세

- 가. 가용 소방력 분석 및 비상근무조 편성
- 나. 출동장비 정비 및 점검
- 다. 유·무선망 개방점검
- 라. 의용소방대 소집 및 활용계획
- 마. 소방업무의 응원협조체제 검토

2. 예방활동

- 가. 소방홍보활동 전개(매스컴·가두방송)
- 나. 예방순찰조 편성 운영(기동·도보)
- 다. 화재취약 대상지역 방화진단 및 경계
- 라. 화재위험에 대한 경보 발령

3. 진압활동

- 가. 화재취약 지역별 방호계획 및 소방활동구역 설정범위 검토
- 나. 지휘본부 설치 및 행정지원체제 확립
- 다. 소방대상물 및 기상조건에 따른 출동·진압체제 확립
(고층·지하·위험물·화재경계지구·강풍·폭우·강설시 등)
- 라. 인명구조계획 및 장비점검
- 마. 소방용수조사 및 소화약제 활용계획 검토
- 바. 각 근무자의 임무숙지 및 교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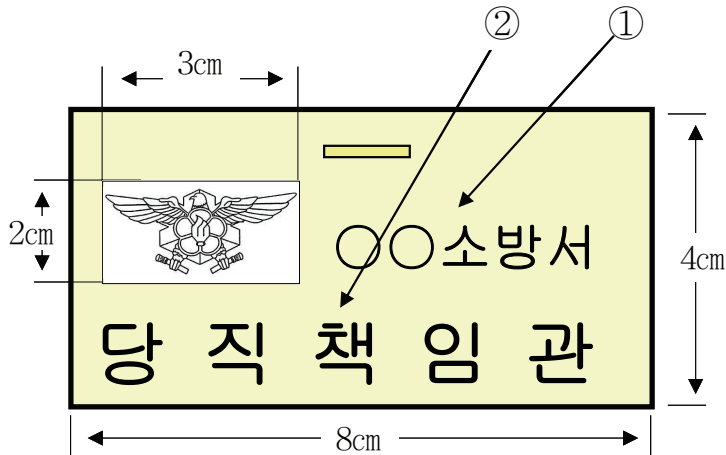
4. 지원요청 시 응원출동준비

- 가. 문제 발생 시 대체자원 확보
- 나. 지원능력 및 응원협정 등 검토
- 다. 지원출동 인원·장비 점검
- 라. 소방활동의 기타 재해지원 및 준비(한해·수해·풍해·설해·지진 등)

[별표 3]

(상 황) 당 직 근 무 표 찰

〈 규 격 · 제 식 및 기 재 사 항 〉



〈 비 고 〉

1. 표찰의 바탕색은 미색으로, 소방표지구역의 바탕색은 적색으로 하며 소방표지는 황색으로 한다.
2. 위의 ①, ②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상황)당직근무 관서 명을 기재한다.
 - ② “당직책임관”, “(상황)당직책임관”, “당직근무”, “(상황)당직근무”로 기재한다.
3.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글자의 색
①	20포인트	굴림체(진하게)	검정색
②	28포인트	굴림체(진하게)	검정색

4. 재료는 프라스틱을 사용하거나, 보존용지(1종, 120g/m²)에 칼라 출력하여 P.V.C (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5. (상황)당직근무표찰의 상측 중앙부에 구멍을 뚫어 집게로 매달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6. 전면과 후면을 동일하게 표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상황)당직 근무일지

				담당자	00장	00장						
20 요일(근무팀 :)												
인 원	정원	현원	근무 인원	사 고 인 원								
				계	연 가	병가	교육	출 장	파견	공 가	기타	
소 방 공 무 원	계											
	당 번											
	일근(행정)											
	비 번			-	-	-	-	-	-	-	-	-
의무소방 등												

○ (상황)당직 근무자 현황

연번	계급	성명	담당 업무	서명	비고
1			(상황)당직 책임관		
2			(상황)당직관		
3			일직		
4			숙직		

○ 주요행사(회의, 소방력 동원 등)

행사명	시 간	장 소	동원 소방력		내 용
			인원	차량	

○ 순찰·점검

부서명	점검시간	점검결과	부서명	점검시간	점검결과

(갑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소방법령 I

시 간	항 목	근 무 내 용	비 고

(을지) [별지 제3호 서식]

비 상 근 무 발 령 서

1. 비상근무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비상근무의 종류 :

3. 비상근무 대상 :

4. 비상소집

가. 응소장소·시간 :

나. 복장 및 휴대품 :

다. 비상소집결과 보고처 :

 년 월 일

발 령 관

수신처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 연락부

연 번	소 속	계 급	성 명	주소(거주지)	비상연락처		연락 전달자	사고 내용
					1차	2차		

* 계급란에는 계급과 필수요원 여부를 기재 - 예 : 소방위(필수요원)

* 연락처란에 1차 : 핸드폰 등 전화번호, 2차 : 일반전화 등 연락처

* 연락전달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 거주지 인접한 자의 연락처 기재

* 사고 : 병가, 휴가, 출장, 교육, 파견, 기타(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정직, 유학, 해외주재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1. 기 관 명 :
2. 비상소집명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구 분	총원	사고	응소 대상 인원	응소 인원	응소율 (%)	시간별 응소현황				
						1시간 이내		1시간후 2시간이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계	계									
	필수원									
	일반원									
기 관 명	계									
	필수원									
	일반원									
기 관 명	계									
	필수원									
	일반원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사고자를 제외한 인원임
 - 사고 : 병가, 휴가, 출장, 교육, 파견, 기타(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정직, 유학, 해외주재관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3시간을 초과하여 응소한 자는 미응소자로 처리.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10.12.27] [대통령령 제22545호, 2010.12.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2009.3.31>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전보·과전·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방재청·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대·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2009.3.31, 2011.1.28>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전보·과전·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방재청·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단·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시·도소속 국가소방공무원중 소방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5.10, 2004.5.24, 2005.3.31, 2006.6.23>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중앙소방학교소속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③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을 중앙119구조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9.5.10, 2003.1.20, 2004.5.24>

④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당해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0, 2006.12.21>

⑤ 삭제 <1991.12.31>

⑥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0.12.27>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시·도소속 국가소방공무원중 소방령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5.10, 2004.5.24, 2005.3.31, 2006.6.23>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중앙소방학교소속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③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다)을 중앙

119구조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9.5.10, 2003.1.20, 2004.5.24, 2011.1.28〉

④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당해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0, 2006.12.21〉

⑤ 삭제 〈1991.12.31〉

⑥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0.12.27〉

제4조(임용시기) ① 소방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일자소급의 금지) 소방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10, 2005.3.31〉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보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대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제7조(통계보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단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1.1.28>

제2장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2.28, 1995.12.29>

②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이, 시·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3.31, 2007.10.4>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9.5.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5.10>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신규채용

제14조(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15조(특별채용의 요건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3.1.20>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당해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

⑤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의 특별채용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3.31, 2008.12.31, 2010.12.27>

⑥ 법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⑦ 법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특별채용은 소방위·지방소방위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당해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10.12.27>

⑧ 법 제6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경위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⑨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내에서 이미 5년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를 그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역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중 지방소방사정원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신설 1986.4.26, 1995.12.29, 2006.6.30>

1.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군지역

2.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지역 또는 읍·면지역

⑩ 제3항 내지 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 기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4.26, 1999.5.10, 2008.12.31>

제15조(특별채용의 요건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기계·화공·전기·통신·안전관리·자동차운전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8.12.31>

④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3.1.20>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

기관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당해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
- ⑤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의 특별채용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3.31, 2008.12.31>
- ⑥ 법 제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⑦ 법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의 특별채용은 학사학위소지자를 소방위·지방소방위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외국어 능력은 당해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고등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정 1999.5.10>
- ⑧ 법 제6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경위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 ⑨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내에서 이미 5년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를 그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역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중 지방소방사정원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신설 1986.4.26, 1995.12.29, 2006.6.30>
1.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군지역
2.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지역에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시지역 또는 읍·면지역
- ⑩ 제3항 내지 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 또는 연구실적,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정 기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4.26, 1999.5.10, 2008.12.31>

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와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합격되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마친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8.12.31>

② 제1항의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신규채용방법)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6월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도서·벽지·군사분계선 인접지역등 특수지역 근무희망자를 그 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의 피부양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무할 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유예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당해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5.10>

제20조(임용의 유예)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질병·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

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소방공무원(이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

청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일 때
3.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

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 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동일계급의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이수에 필요한 실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제4장 보직관리

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에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기관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삭제 <2010.12.27>

4. 직제의 신설·개폐등이 있는 때에 2월이내의 기간 소속 소방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소방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전공분야·교육훈련·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에 상위계급의 결원이 있고,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승진임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④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이 정하는 보직관리기준외에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전보의 기준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①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지방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에 의하여 소방사·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자는 최하급 소방기관의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당해 자격 관련부서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1999.5.10, 2008.12.31>

제27조(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최초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관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8조(전보의 제한) ① 소방공무원은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4·26, 2003.1.20>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의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전보의 경우
 3. 전보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의 경우
 4. 당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의 경우
 5.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시보임용중인 경우
- ②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의 교관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 또는 교육과정의 개폐가 있거나 교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 ③ 법 제6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4.26, 2010.12.27>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이내에 최초 임용기관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6.4.26>

⑤ 임용권자는 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 대상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6.4.26, 2003.1.20>

1. 직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강임 또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상호간에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1. 시·도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소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시·도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소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시·도간 교류하는 경우
 3. 지방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의 연고지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인원(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5.10, 2008.12.31>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당해 시·도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의 동의없이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9.5.10, 2008.12.31>

[전문개정 1995.12.29]

제30조(파견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995.4.20, 2005.3.31, 2010.12.27>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이내, 동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파견함에 있어서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삭제 <1999.5.10>

제30조의2(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제30조의3(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30조의4(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정한다)를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제근무로 인하여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및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 ①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2.28, 1991.7.30, 1995.4.20, 1999.5.10, 1999.12.28, 2005.3.31, 2010.12.27>

1. 제30조제1항에 따른 1년(제3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이상의 파견
2. 삭제 <2010.12.27>
3. 삭제 <2010.12.27>
4.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의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배양을 위한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 소방방재청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방소방령 이하 시·도 소방공무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제32조(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임용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계급이 당해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인 때에는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3.1.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인력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8.12.31>

제5장 채용시험

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성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시험실시권)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이하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과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5.24>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소방사 또는 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③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의 문제 출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전문개정 1999.5.10]

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기관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는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의 방법)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필기시험·체력시험·신체검사·면접시험·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5.3.31, 2010.12.27>

1.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을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근력·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작성

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4. 면접시험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지방소방위예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4.5.24>

제36조(시험의 방법)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신체검사·실기시험·필기시험·면접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5.3.31>

1.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2.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체력 및 적성을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을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을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지방소방위예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4.5.24>

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4·26, 1991·2·28, 2010.12.27>

1.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 체력시험

4. 제4차시험: 신체검사

5. 제5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6·4·26, 2010.12.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1986·4·26, 2010.12.27>

제37조(시험의 구분등)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경우에는 제4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4·26, 1991·2·28>

1. 제1차시험:신체검사

2. 제2차시험:실기시험

3. 제3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 제4차시험: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 제5차시험:면접시험

②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6·4·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3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4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1986·4·26>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중 “선발예정인원”을 “선발예정인원(계열별 선발예정인원)”으로 본다. <개정 1999.5.10>

[전문개정 1994·8·25]

[시행일 : 2011.1.28] 제38조

제39조(특별채용시험)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86.4.26, 1989.2.28, 1995.12.29, 2005.3.31, 2006.12.21, 2010.12.27>

1.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체력시험·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1989.2.28>

제39조(특별채용시험)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86.4.26, 1989.2.28, 1995.12.29, 2005.3.31, 2006.12.21>

1. 법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2. 법 제6조제2항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다만,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 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해당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3.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다만, 사업용 또는 운송용 조종사의 경우에는 「항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1989.2.28>

제40조(특별채용시험의 요구) ①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권자가 다른 경우에,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위의 내용·임용예정자의 학력·경력·연구실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권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2010.12.27>

제42조(채용시험의 특전) ① 소방업무와 관련있는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자격증의 소지자가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또는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0.5할 이내를 최고점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면허증) 분야 및 사무관리자격증 분야의 가점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각 분야내에서 2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3.1.20, 2008.12.31, 2010.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과목마다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42조(채용시험의 특전) ① 소방업무와 관련있는 자격증(면허증)소지자,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일정 어학능력자가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또는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0.5할 이내를 최고점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격증(면허증)분야, 사무관리분야 또는 어학능력분야별 가점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각 분야내에서 2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3.1.20, 200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과목마다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9.5.10>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의 연령은 21세이상 30세이하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10, 2008.12.31, 2010.12.27>

④ 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

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3.1.20, 2005.3.31, 2006.5.30>

⑤ 임용권자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1.20>

⑥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제목개정 2003.1.20]

제43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99.5.10>

②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의 연령은 21세이상 30세이하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10, 2008.12.31>

④ 소방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3.1.20, 2005.3.31, 2006.5.30>

⑤ 임용권자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1.20>

⑥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제목개정 2003.1.20]

제44조(시험과목)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은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1986·4·26, 1999.5.10, 2006.12.21, 2010.12.27>

제44조(시험과목)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 필기시험은 한국사와 소방관계법규로 한다. <개정 1986·4·26, 1999.5.10, 2006.12.21>

제45조(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소방장·지방소방장 및 소방교·지방소방교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소방사·지방소방사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전문개정 2003.1.20]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3차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3. 제4차시험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②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 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③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4. 예의·품행·성실성·봉사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38조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제39조의 특별채용시험

가. 면접시험만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나.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 필기시험·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라. 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6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마. 필기시험·체력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⑤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

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7]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86·4·26, 1991·2·28, 1999.5.10, 2006.12.21>

1.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한다.
 2. 제2차 시험 중 체력검사는 별표 6에 따른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고, 그 밖의 실기시험은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한다.
 3. 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의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 ②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에 따른다. <개정 1999.5.10, 2006.12.21>
- ③ 면접시험에서는 해당시험에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평정요소별 점수 및 합격자결정방법을 공고하고,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6.12.21>

1.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성적(제3차 시험성적과 제4차 시험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한 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순위에 따른다. 다만, 체력검사 성적만 있는 경우에는 체력검사 성적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 2011.1.28] 제46조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3.1.20>

제48조(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① 시험실시권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합격자명단을 임용권자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2이상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 경우(근무예정지역별로 시험을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생활연고지·근무희망지 및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배정하고 각 임용권자에게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험합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응시수수료)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25>

1. 소방령·지방소방령이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2.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장·지방소방장 채용시험 : 일반직 6·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3. 소방교·지방소방교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 8·9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4.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일반직 6·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는 소방방재청장 및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응시원서에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9.5.10, 2004.3.17, 2004.5.24>

③ 시험실시권자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제5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 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

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2조(시험실시결과보고)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4.5.24>

제53조(합격증명서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1통에 200원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0.12.27>

제53조(합격증명서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1통에 200원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0.12.27>

제6장 신분보장

제54조(강임의 범위) 소방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55조(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동일계급에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제56조 삭제 <1999.5.10>

제57조 삭제 <1999.5.10>

제58조 삭제 <1999.5.10>

제59조(보훈) ①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9.30, 1999.5.10, 2005.3.31, 2008.12.31>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8.12.31>

[본조신설 1995.12.29]

제6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계획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에 따른 신체적 부상 및 질병 특성
2. 소방공무원의 비일상적 생활환경에 따른 정신적 질병 특성
3. 소방공무원의 건강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4. 소방공무원의 개인별 질병진료기록, 특수건강진단결과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계획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건강관리계획 수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제61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
2. 소방공무원의 특수환경에 따른 질병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3. 그 밖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소방공무원의 진료개시 시기, 그 밖에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62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공립병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소방전문치료센터로서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병원을 말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의료기관 중에서 시·도지사가 요청한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이 경우의 진료는 응급진료만을 말한다)
2.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3. 그 밖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④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7장 보칙 <신설 2009.7.7>

제63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43조제2항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7]

부칙 <제22647호, 2011. 1.28>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를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경 이하의”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1. 1. 3] [행정안전부령 제187호, 2011. 1. 3, 일부개정]

제1장 임용과 발령

제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요구를 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성명과 그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중 인사기록카드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다시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제청하는 경우
2. 임용권자가 동일한 소방기관내에서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① 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이하 “공무원인사처리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공무원임용서 또는 공무원임용제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3.31>

②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승진임용 또는 면직할 때에는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임용조사서 또는 임용제청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에 산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임용권자는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승진 또는 전보임용할 때에는 당해소방공무원에게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소방기관(영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인사발령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당해소방공무원에게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 훈련·국내외 출장·휴가명령 및 승급은 회보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에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행하는 소방령 이상의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통지한다. <개정 1999.6.7, 2004.5.29>

제5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 발령대장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6조(전력조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력조회서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6.7, 2004.5.29>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 소방기관의 장은 재직중인 소방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퇴직소방기관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조회방법에 의하여 최종퇴직소방기관외의 재직 경력에 대하여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인사처리규칙에 의한다.

제9조(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대비표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단위로 한다.

제2장 인사기록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관리 등) ① 소방방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중앙소방학교장·중앙119구조단장·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9, 1999.6.7, 2003.1.28, 2004.5.29, 2011.1.28>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인사기록은 원본과 부분으로 구분한다.

② 원본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별지 제3호서식]
2. 복무선서[별표 9]
3. 공무원연금카드(부분)
4. 공무원건강카드
5. 삭제 <1994.9.3>
6. 신원조사회보서
7. 삭제 <2006.9.7>

8.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9. 삭제 <2006.9.7>
 10. 면허 기타 자격증명서
 11. 경력증명서
 12. 전력조사회보서
 1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4.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부분은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사본으로 한다.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 ①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인사기록 원본 1부와 부분을 제13조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보관하거나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8>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1. 분실한 때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4.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인사기록의 관리) ① 소방공무원인사기록원본은 임용권자가 관리한다. 다만,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인사기록 원본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인사기록 원본은 그 소속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단장이 각각 관리한다. <개정 1991.12.31, 1997.4.19, 1999.6.7, 2004.5.29, 2011.1.28>

② 인사기록 부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1997.4.19, 1999.6.

7, 2003.1.28, 2004.5.29, 2011.1.28)

1.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단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을 제외한다)과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단장은 소속국가소방공무원
 3.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은 소속지방소방공무원
- ③ 소방공무원이 승진·전출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 소속인사기록관리자는 신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5일 이내에 인사기록과 최근 3년간(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와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표의 부분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을 본인에게 지참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4.19>

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징계·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소방공무원이 인사기록카드(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성명·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을 변경한 때에는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원본 또는 부분을 관리하는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서류(사본)를 첨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가. 강등: 9년
- 나. 정직 : 7년
-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9.6.7, 2004.5.29>

[본조신설 1986.12.18]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기록관리담당자
3. 본인
4.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소정의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인사기록의 수정)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 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및 보관) ① 인사기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철하되, 내면 우측에 완결일자 순에 따라 밑으로부터 위로 편철하고, 내면 좌측에는 그 목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공무원연금카드 및 공무원건강카드는 따로 보관할 수 있다.

②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철은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인사기록관리자가 따로 영구 보존한다.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통보)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9.3, 1997.4.19>

제3장 보직관리

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① 영 제26조제1항에서 “최하급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특별시·광역시·도의 소방본부·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소방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4.9.3, 1997.4.19, 1999.6.7, 2003.1.28, 2004.5.29, 2011.1.28>

② 영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라 함은 별표 6에 의한 자격증의 소지자를 말한다. <신설 1991.2.28, 1999.6.7, 2009.2.18>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①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직위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3]

제20조(전보의 제한) ① 삭제 <2011.1.3>

②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된 직위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
2. 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3년

제21조(전출·전입요구 및 동의) ① 임용권자가 다른 소방기관의 소속소방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입·전출동의요구서에 의하여 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소방공무원을 다른 소방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 인사교류계획실시권고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6.7, 2004.5.29, 2005.3.3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소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출·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임일자등을 고려하여 발령예정일자를 서로 같은 일자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파견요청등)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또는 파견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7>

제22조의2(시간제근무) ①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는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제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사유 소멸 등으로 시간제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간제근무명령서 또는 시간제근무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3]

제22조의3(업무대행 소방공무원)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소방공무원은 1명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특성상 여러 명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3]

제4장 채용시험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 채용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 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 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등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1989.1.11>

④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3>

1. 대학졸업자 :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의 계급
2. 전문대학졸업자 : 소방교·지방소방교 이하의 계급
3. 고등학교졸업자 : 소방사·지방소방사

⑤ 삭제 <1999.6.7>

⑥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예정일,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7>

⑦ 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12.21, 2011.1.3>

⑧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채용시험은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89.1.11>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시·도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 채용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 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 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등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1989.1.11>

④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졸업자 : 소방장·지방소방장

2. 전문대학졸업자 : 소방교·지방소방교

3. 고등학교졸업자 : 소방사·지방소방사

⑤ 삭제 <1999.6.7>

⑥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예정일,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7>

⑦ 영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⑧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채용시험은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89.1.11>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시·도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제23조의2(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체력시험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력시험의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3]

제24조(채용시험의 특전)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과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 분야별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3.1.28, 2011.1.3>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과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어학능력 분야별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3.1.28>

제25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1.1.3]

제26조 삭제 <2006.12.21>

제27조(시험위원의 수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3인 내지 5인으로 하고,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위원은 3인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1999.6.7, 2003.1.28, 2005.3.31, 2007.12.13, 2011.1.3>

1.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
2. 삭제 <2006.9.7>
3.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4. 삭제 <2006.9.7>
5. 삭제 <2006.9.7>
6.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통
② 필기시험 합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7.12.13, 2011.1.3>

1. 가족관계증명서
2.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 가운데 그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된다) 1통
4. 외국어성적증명서 1통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한 서류
-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채용시험 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2011.

1.3)

1.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3.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험요구기관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7.12.13>

⑥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3>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28조 (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3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1999.6.7, 2003.1.28, 2005.3.31, 2007.12.13>

1.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

2. 삭제 <2006.9.7>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4. 삭제 <2006.9.7>

5. 삭제 <2006.9.7>

6.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통

② 제3차시험 합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7.12.13>

1. 호적 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2.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③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요구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채용시험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개정 1989.1.11, 2006.9.7, 2007.12.13>

1. 응시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삭제 <1994.9.3>
4. 삭제 <2007.12.13>
5. 최종학력증명서 1통
6. 삭제 <2007.12.13>
7.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통
8. 경력증명서 1통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④ 제3항의 특별채용시험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1.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3.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시험일시·장소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시험요구기관의 장을 거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7.12.13>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의 통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1.1.3>

1. 삭제 <1994.9.3>
2. 삭제 <2006.9.7>
3. 최종학력증명서 2통
4. 삭제 <2006.9.7>
5.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통
6. 경력증명서 2통
7.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통
8. 민간인신원진술서 3통
9.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5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2011.1.3>

1.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연령이 많은 사람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1. 취업보호대상자

2. 고학력자

3.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자

4. 병역을 마친 자

5. 연령이 많은 자

제31조(등록서류의 보존) 채용후보자등록서류는 1통을 임용서류에 첨부하고 1통은 인사기록서류로 보존한다.

제5장 삭제 <1999.6.7>

제32조 삭제 <1999.6.7>

제33조 삭제 <1999.6.7>

제34조 삭제 <1999.6.7>

제35조 삭제 <1999.6.7>

제36조 삭제 <1999.6.7>

제37조 삭제 <1999.6.7>

제38조 삭제 <1999.6.7>

제39조 삭제 <1999.6.7>

제40조 삭제 <1999.6.7>

제41조 삭제 <1999.6.7>

제42조 삭제 <1991.12.31>

제43조 삭제 <1999.6.7>

제6장 보칙

제44조(인사보고) ① 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부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9>

②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원본의 관리자에게 인사기록 부분에 인사기록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5.29>

[전문개정 1999.6.7]

제4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서식외에 소방공무원의 인사사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은 공무원인사처리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부칙 <제191호, 2011.1.28>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의”를 “중앙119구조단 소속의”로,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③ 생략

소방공무원 징계령

[시행 2011. 1.28] [대통령령 제22647호, 2011. 1.28, 타법개정]

제1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3.8.4>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1.2.28]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소방정 및 소방령과 소방방재청소속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5.10.19, 2003.1.20, 2004.5.24>

②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시·도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1.20>

③ 삭제 <1991.12.31>

④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단·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3.31, 2011.1.28>

1.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
2. 중앙119구조단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위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
3.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지방소방위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

[전문개정 1983.8.4]

제3조(관련사건의 관할) ① 임용권자가 동일한 2인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각기 징계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

〈개정 1983.8.4, 2003.1.20〉

1. 그중의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2. 각자가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기관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시·도간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1991.12.31, 2003.1.20, 2004.5.24〉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방서에서 설치되는 징계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 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개정 2009.3.31〉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 계급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위원이 될 소방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속 6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9.3.31〉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9.3.31, 2011.1.28〉

1. 소방방재청 및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지방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단·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제5조 삭제 〈2009.3.31〉

제6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징계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개정 2003.1.20〉

②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7조(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3.1.20〉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3.31〉

[제목개정 2009.3.31]

제8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3.8.4, 2003.1.20, 2004.5.24, 2005.3.31〉

1. 소방준감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

2.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②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의 신청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④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3항의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0>

⑤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제10조(징계사건의 통보)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소방공무원이 아닌 소방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② 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징계사유를 통보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제11조(징계의결기한) ①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3.8.4>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제12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심의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때에는 따로 출석통지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8.4, 2003.1.20>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부받은 소방기

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④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1회 이상 출석통지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⑤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3.1.20>

⑥징계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출석통지는 관보(시·도의 경우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0>

⑦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3.1.20>

⑧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하는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제목개정 2003.1.20]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행하는 외에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 ③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 ④징계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에 의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당한 의견으로 본다. <개정 1983.8.4, 2003.1.20>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징계의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1. 징계심의대상자의 인적사항
2. 의결주문
3. 적용법조
4.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인정여부
5. 징계심의대상자 및 증인출석 여부
6. 정상 참작 여부
7. 의결방법
8. 심의결론

제15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심의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1983.8.4, 2003.1.20>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서 당해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보충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위원을 보충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위원을 보충임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를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3.8.4>

제16조(징계의 양정) ①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1.20, 2004.5.24>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경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제17조(징계의결의 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 집행) ①징계의 집행은 징계의결의 통고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제척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개정 2003.1.20, 2009.3.31>

②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고 받은 경우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그 집행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제19조(보고 및 통지) 임용권자와 징계집행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집행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제19조의2(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본조신설 1983.8.4]

제19조의3(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소방공무원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그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 기타 정상

[본조신설 1983.8.4]

제20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징계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0]

부칙 <제22647호, 2011. 1.28>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10.12.27] [대통령령 제22547호, 2010.12.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7]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①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0.12.27>

②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1986.4.26, 1999.9.9, 2005.3. 31, 2010.12.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당초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뺀 인원수를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로 한다. <신설 1999.9.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위·지방소방위이하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방위·지방소방위예의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예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1.5할이내
2.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예의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예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2할이내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소방정·지방소방정: 4년
2. 소방령·지방소방령: 3년
3. 소방경·지방소방경: 3년
4. 소방위·지방소방위: 3년
5. 소방장·지방소방장: 2년
6. 소방교·지방소방교: 1년 6개월
7. 소방사·지방소방사: 1년 6개월

② 제1항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1.4.16, 2005.2.25, 2005.3.31, 2007.1.5, 2010.12.27>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③ 제1항의 기간에는 당해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한다.

④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장·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최근 10년이내의 경력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된 계급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0.12.27>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신설 2009.3.31>

⑥ 강등되거나 강임된 사람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0.12.27>

⑦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原)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0.12.27>

⑧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0.12.27>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3.31, 2010.12.27>

1.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강등·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입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할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③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위(국가소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는 소방위)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다. <신설 1986.4.26>

⑤ 삭제 <2007.1.5>

제6조의2(근속승진) 법 제12조의2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소방장·지방소방장 8년 이상

2. 소방교·지방소방교 7년 이상

3. 소방사·지방소방사 6년 이상

[본조신설 2007.1.5]

제6조의2(근속승진)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근속승진 후보자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최근 2년간(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최근 3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임용권자별로 정한 소방경·지방소방경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④ 임용권자는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⑤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위·지방소방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시행일 : 2012.2.5] 제6조의2

제2장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소방정·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전보·특별승급·성과상여금지급·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③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수가 적어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제4호의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개정 1986·4·26, 1991·4·16>

1. 수 2할
2. 우 4할
3. 양 3할
4. 가 1할

④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근무성적 평정의 기준·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② 소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③ 소방공무원이 6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④ 소방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정기평정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 다만, 강임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⑥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

원으로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전의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제8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휴직·직위해제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월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소방공무원이 직위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② 소방공무원이 6월이상의 국외파견 기타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전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당해 평정으로 같음한다. 다만, 직위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공무원이 6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④ 소방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 정기평정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 다만, 강임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⑥ 국가소방공무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전의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제9조(경력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② 경력평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1·4·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1. 기본경력

- 가. 소방정 · 지방소방정 · 소방령 · 지방소방령 · 소방경 · 지방소방경 · 소방위 · 지방소방위 · 소방장 · 지방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 나. 소방교 · 지방소방교 · 소방사 · 지방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2. 초과경력

- 가. 소방정 · 지방소방정: 기본경력 전 3년간
- 나. 소방령 · 지방소방령: 기본경력 전 5년간
- 다. 소방경 · 지방소방경 · 소방위 · 지방소방위: 기본경력 전 4년간
- 라. 소방장 · 지방소방장 · 소방교 · 지방소방교: 기본경력 전 3년간
- 마. 소방사 · 지방소방사: 기본경력 전 2년간

⑤ 경력평정의 시기 · 방법 · 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제9조(경력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 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 ② 경력평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 · 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1.4.16)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 · 확인할 수 있다.
-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4년간으로,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6년간으로 한다.
- ⑤ 경력평정의 시기 · 방법 · 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 · 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휘역량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 및 전문능력에 대한 평가에 의하되,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평정대상 성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4.16, 2003.1.20, 2007.1.5, 2010.12.27)

- 1. 소방정 · 지방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 2. 소방령 · 지방소방령 · 소방경 · 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 3. 소방위 · 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전문능력

성적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7.1.5, 2010.12.27>
 - 1. 소방정·지방소방정: 지휘역량교육성적 10점
 - 2.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 지휘역량교육성적 6점, 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및 체력검정성적 7점
 -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전문교육성적 6점, 직장훈련성적 6점, 체력검정성적 7점 및 전문능력성적 6점
- ③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 ④ 소방간부후보생 또는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신입교육훈련성적은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성적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10.12.27>
- ⑤ 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제10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교육·전문교육·직장훈련 및 체력검정에 의하되,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평정대상 성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4.16, 2003.1.20, 2007.1.5>

- 1. 소방정·지방소방정 : 기본교육성적
 - 2. 소방령·지방소방령 : 기본교육성적·전문교육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 3.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 기본교육성적·전문교육성적·직장훈련성적 또는 체력검정성적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20점 만점으로 하되, 대상자별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7.1.5>
- 1. 소방정·지방소방정 : 기본교육성적 20점
 - 2. 소방령·지방소방령 : 기본교육성적 10점, 전문교육성적 7점 및 체력검정성적 3점
 - 3.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 기본교육성적 10점, 전문교육성적 7점, 체력검정성적 3점 또는 직장훈련성적 3점
- ③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④ 소방간부후보생 또는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성적은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며, 소방교·지방소방교가 당해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교육훈련성적을 당해 소방교·지방소방교의 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⑤ 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은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1986.4.26, 1991.12.31, 1999.9.9, 2003.1.20, 2007.1.5, 2008.12.31, 2010.12.27>

1.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2.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3. 도서·벽지 등 특수지 또는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호의 자가 작성한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9.9.9, 2003.1.20, 2004.5.24>

1.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 및 소방방재청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
2. 중앙소방학교 또는 중앙119구조대소속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대장
3.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다만,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

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제19조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
 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제2항
 의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대상자통합명
 부를 작성한다. <신설 1986.4.26>

④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
 여 이를 작성한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7.1.5>

제11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할, 경력평정점 3할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2
 할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1986.4.26, 1991.12.31, 1999.9.9, 2003.1.20, 2007.1.5, 2008.12.31>

1.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2.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교육훈련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4. 도서·벽지 등 특수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호의 자가 작성한다. <개정 1991.
 12.31, 1994.8.25, 1999.9.9, 2003.1.20, 2004.5.24>

1.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 및 소방방재청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소방방재
 청장
2. 중앙소방학교 또는 중앙119구조대소속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대장
3.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다만,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
 방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제19조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
 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제2항
 의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대상자통합명
 부를 작성한다. <신설 1986.4.26>

④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작성한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7.1.5>

제12조(동점자의 순위)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고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2010.12.27>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국가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와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삭제 <2010.12.27>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4.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5. 제8조제5항에 따라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6. 삭제 <2010.12.27>
7.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 재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1·4·16, 1994·8·25>

③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퇴직하는 경우,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0.12.27>

제13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후

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국가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와 지방소방공무원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4.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5. 제8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6. 근무성적평정의 가점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7.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 재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1·4·16, 1994·8·25〉
- ③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퇴직자가 있는 경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14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①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승진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심사

제16조(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2회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승진심사를 실시한 후에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선발된 인원이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소방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5>

[전문개정 1986·4·26]

제17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0.12.27>

③ 제1항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27>

④ 위원은 당해 승진심사기간중에는 2이상의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9.9>

⑥ 삭제 <2010.12.27>

제17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승진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신설 1994.8.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의 계급인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중 최상위의 계급 또는 선임자가 된다. <개정 1994.8.25, 1999.9.9, 2004.5.24>

④ 위원은 당해 승진심사기간중에는 2이상의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9.9>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4.8.25, 1999.9.9, 2008.12.31>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지방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심사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소방기관(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신설 1994.8.25, 2010.12.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1991.4.16, 1991.12.31, 1994.8.25, 1995.10.19, 1999.9.9, 2004.5.24, 2005.3.31, 2006.6.12, 2010.12.27>

1. 소방방재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상위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3. 중앙소방학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4. 소방기관의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④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8.25, 2010.12.27>

⑤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승진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신설 1994.8.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1.4.16, 1991.12.31, 1994.8.25, 1995.10.19, 1999.9.9, 2004.5.24, 2005.3.31, 2006.6.12>

1. 소방방재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방경이상의 소방공무원과 소방방재청의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속 소방경·지방소방경이상의 소방공무원. 다만, 당해 기관에 위원이 될 소방공무원의 수가 위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6급 이상 재난관련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3. 중앙소방학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방경이상의 소방공무원
4. 삭제 <1991.12.31>

④ 제17조제3항 후단,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8.25>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4.8.25, 1999.9.9, 2008.12.31>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12.31, 1999.9.9, 2003.1.20, 2004.5.24, 2005.3.31, 2010.12.27>

1. 소방방재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2. 소방방재청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정이하에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3. 중앙소방학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위이하에의 승진심사
4. 삭제 <1991.12.31>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12.31, 1999.9.9, 2003.1.20, 2004.5.24, 2005.3.31>

1. 소방방재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령 내지 소방준감에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2. 소방방재청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경이하에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3. 중앙소방학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위이하에의 승진심사

4. 삭제 <1991.12.31>

제20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21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공무원중에서 당해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2조(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예정인원수의 4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22조 (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다음표에 의한 인원수를 그 대상으로 한다.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순위
1인	5번까지
2인	8번까지
3인	11번까지
4인	13번까지
5인	15번까지
6인	16번까지
7인	17번까지
8인	18번까지
9인	19번까지
10인이상	2배수까지

[전문개정 1986·4·26]

[시행일 : 2011.12.21] 제22조

제23조(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5>

1. 삭제 <2010.12.27>
2. 제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제24조(승진심사의 기준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1994·8·25, 2003.1.20, 2010.12.27>

1. 근무성과: 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
 2. 경험한 직책: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평가기준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제24조 (승진심사의 기준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1994·8·25, 2003.1.20>

1. 근무성과
 2. 경험한 직책
 3. 국가관 및 직장인으로서의 인품
 4. 적격성 및 발전성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평가기준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제25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4.5.24>

1. 승진심사의결서

2. 승진심사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종합평가서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4.26>

제26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26조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27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①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로 한다.

② 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안분하여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86·4·26>

③ 심사승진임용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한 다. <개정 1986·4·26>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의 승진시험 실시에 관한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0.12.27>

② 삭제 <2010.12.27>

③ 삭제 <2007.1.5>

[전문개정 1986.4.26]

제30조(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는 그 해당 계급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4.8.25, 2005.3.31, 2007.1.5, 2010.12.27>

1.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2. 삭제 <2010.12.27>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4. 삭제 <1999.9.9>

제30조의2 삭제 <1999.9.9>

제31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가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개정 1999.9.9, 2004.5.24>

②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12.27>

④ 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1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제32조 (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이하의 승진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4.16, 1999.9.9, 2004.5.24>

④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⑤ 제1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제1차시험성적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점수에 미달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33조(필기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과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0>

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전과목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삭제 <2010.12.27>

③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교육훈련성적·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12.27>

④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10퍼센트 및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퍼센트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성적을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다. <개정 1991·4·16, 2010.12.27>

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전과목 만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고려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1991·4·16>

③ 제3차시험의 합격자는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교육훈련성적·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④ 최종합격자는 제1차시험성적 3할, 제2차시험성적 3할, 제3차시험성적 1할 및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3할을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3차시험을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성적을 4할의 비율로 합산한다. <개정 1991.4.16>

제35조(시험위원의 임명등) ①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9.9.9, 2004.5.24>

제3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제6장 특별승진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1.4.16, 1991.12.31, 2003.1.20,>

2005.3.31)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자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법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또는 직무수행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로 한다.
-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유공자의 공적은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에 한한다.

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은 다음 각호의 계급에 의 승진에 한한다. <개정 2010.12.27>

1.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이하의 승진
2. 제3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모든 계급에의 승진

제40조(특별승진의 실시)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7]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

무기간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이상이 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행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6조(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행한다. <신설 2010.12.27, 2011.12.21>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이상이 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행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행한다. <신설 2010.12.27>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소방방재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1991.12.31, 1999.9.9, 2004.5.24>

② 지방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1991.12.31, 1999.9.9>

③ 제3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1.5>

④ 특별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24>

제43조(대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4]

부칙 〈제23382호, 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소방위”를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방위”를 “소방경·소방위”로 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2. 1. 1] [행정안전부령 제263호, 2011.12.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승진임용예정인원)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계급별, 승진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4.20, 2007.1.5, 2011.1.3>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시험승진에 있어서는 제1차 시험일을, 심사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 한 기간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 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하되 환산율은 2할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장 근무성적등 평정

제4조(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영 제7조·제9조·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3]

제5조(근무성적평정표)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각각 평정한다.

제6조(근무성적의 평정자)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구분하며, 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3>

[제목개정 2011.1.3]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2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1999.10.7, 2011.1.3>

제8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우·양·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9.10.7>

1. 수 : 46점 이상~50점
2. 우 : 38점 이상~46점 미만
3. 양 : 28점 이상~38점 미만
4. 가 : 28점 미만

② 제1항제4호의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3>

② 제1항의 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과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3>

④ 제3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2011.1.3>

제10조(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영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1.3>

② 삭제 <2011.1.3>

③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1.1.3]

제12조(재평정) 경력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근무연수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86.5.9, 1999.10.7, 2011.1.3>

제14조(경력평정의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제4항의 경력을 산입함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되, 그 경력의 2할로 평정한다. <개정 2005.3.31, 2011.1.3>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역량교육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다음의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03.1.28, 2005.3.31, 2007.1.5, 2011.1.3>

1. 소방정·지방소방정 : 10점

2.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 6점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총 6점 이하의 평정점을 말한다. <신설 2007.1.5, 2011.1.3>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신입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해당 계급에서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훈련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 직장훈련의 성적중 제4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03.1.28, 2004.5.29, 2005.3.31, 2007.1.5, 2011.1.3>

④ 영 제10조제1항에서 “체력검정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정점을 말한다. <신설 2003.1.28, 2004.5.29, 2007.1.5, 2011.1.3>

⑤ 영 제10조제1항에서 “전문능력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11.1.3>

⑥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르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3>

제15조의2(가점평정)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3>

②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③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④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 및 특수지에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시·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⑥ 제4항에 따른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3>

⑦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3>

[본조신설 2003.1.28]

제16조 삭제 <2003.1.28>

제17조 삭제 <2003.1.28>

제17조의2 삭제 <2003.1.28>

제18조(근무성적평정표등의 제출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표·경력평정표 및 교육훈련성적표를 평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진대상자명부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결과와 교육훈련성적 평정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승진대상자명부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대상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5.9, 1991.4.20, 2003.1.28, 2011.1.3>

②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 처분,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1. 영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2. 영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3. 영 제23조제3호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③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3년,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1986.5.9, 1994.9.3, 2007.1.5, 2011.1.3>

1. 소방정·지방소방정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50
 2.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2년 이내에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1.1.3>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점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 ⑤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중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은 각각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3>
1.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 가.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나.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 가.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3회 평정

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⑥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신설 2011.1.3>

1. 직장훈련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2. 체력검정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평정점이 있는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⑦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설 2011.1.3>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일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

다. <개정 2011.1.3>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에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관계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관계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를 기재한다.
2.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 추가(비고란에 제외 사유를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3. 경력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정정사유를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제4장 승진심사

제21조(승진심사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3. 승진심사대상자명부
4. 개인별 인사기록
5. 삭제 <2011.1.3>
6. 승진심사 사전심의표(별지 제7호서식)
7. 승진심사 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별지 제7호의2서식)
8. 청렴도평가·역량평가·다면평가 결과(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22조(승진심사장소) ①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승진심사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사 및 서기외의 자가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1.3>

제22조의2 삭제 <2011.1.3>

제23조(승진심사위원등의 준수사항등) ① 영 제17조·영 제18조·영 제2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소집된 승진심사위원·간사 및 서기는 회의개시와 동시에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별표 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7>

- ② 승진심사위원·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간사는 승진심사개시전에 별표 7의 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7>
- ④ 간사와 서기는 당해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승진심사의 평가기준)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객관평가와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평가로 구분하여 점수로 평가하며,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3]

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1.3>

② 제1단계 심사는 사전심의 단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1.1.3>

1.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표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2. 제1호에서 평가된 위원들의 점수를 별지 제7호의3서식에 의하여 집계한 후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환산점수를 계산(보정지수는 제24조의 객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
3. 제2호의 심사환산점수와 제24조의 객관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심사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단계 심사에 회부

③ 제2단계 심사는 본심사 단계로 제1단계 사전심의에서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1.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에의 승진심사 또는 예정인원수가 2명 이내인 승진심사의 경우 제1단계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제2단계 본심사만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3>

제25조의2(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 및 방법 등)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승진심사사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3]

제26조(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의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와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 “승진심사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제27조 삭제 <2011.1.3>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필기시험과목)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하다. <개정 2003.1.28, 2011.1.3>

[제목개정 2003.1.28]

제29조 삭제 <2011.1.3>

제30조(승진시험의 응시와 서류의 제출)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진시험요구서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3]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3>

1.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연령이 많은 사람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 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승진

제33조(특별유공자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10.7, 2004.5.29>

1.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자
2.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자
3. 교관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방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4.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자

제34조 삭제 <2011.1.3>

제35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① 소방기관의 장이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소방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투표로써 한다.

③ 제2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자가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3.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4. 삭제 <2011.1.3>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30>

제36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1.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정·지방소방정: 7년 이상
2. 소방사·지방소방사·소방교·지방소방교·소방장·지방소방장·소방위·지방소방위·소방경·지방소방경: 5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12.30]

제37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0]

제38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0]

제39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 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0]

부칙 〈제263호, 2011.12.2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